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7. 9



2017.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17.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본부장

공동연구자: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2017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1. 개요

-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72조)를 적용받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에 대해 정부지원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목적
- 동 제도는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복리증진과 거래관계자들의 편익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기능
 -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부담을 줄여주고, 일반법인(10%, 20%, 22%)에 비해 낮은 세율(9%, 12%)을 적용하여 조합법인 활동을 지원
 -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7개 항목만 세무조정
 -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추정) 2,360억원

2. 분석내용 및 결과

- (타당성) 조합법인은 영리활동을 영위하면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 공익활동 여부는 보장되지 않음
- 개별 법률상 비영리법인 또는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 복리증진 목적하에서 조합원 상대의 영리 추구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 실제 농협, 수협은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 금지를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최대봉사 및 이익편중 금지 조항과 함께 규정
 - 공익활동과 조합원(취약계층) 지원유무로 타당성 평가 가능
 - 국회 등의 정책 논의과정에서 조합원 지원활동을 1차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익활동으로 인식하기도 함
- (공익사업 지원유무)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회원들의 복리증진으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내용 역시 공익사업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없음
- 조합법인들의 주요 사업내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으로 구성되어 공익성 추구라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성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약이 없는 한 공익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 또한 조합법인의 공익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음
 - 오히려 「새마을금고법」은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적립금)의 50%로 규정하여 지나친 조합원 지원을 제한
 - 조세특례대상 조합법인들의 실제 사업실적(2016)을 분석하면 사회공헌활동, 복지 및 교육 지출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조합원 대상 지원사업
 - 사회공헌활동, 복지 및 교육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수협 10.7%, 산림조합 0.8%, 신협 14.7% 등
- (취약계층 지원유무) 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고 취약계층(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지 않음
- 주로 출자금 납입여부, 지역 거주여부, 특정 산업 종사여부를 조합원 요건으로 규정
 - 특정 산업 종사여부는 실제 가입시점에서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가입 이후에는 더욱 더 관리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대부분의 조합법인에서 자격요건을 거의 두지 않는 준조합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거주민에게 자격을 허용

- (지원수단의 적절성)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 조합법인 투입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자본유입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는 조합법인의 활동 촉진
 - 자본유입 활성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합법인의 주된 배당형태가 출자자배당이면 더 효과적
 - 반대로 이용실적배당이 주된 배당형태이면 자본유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 실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사업이용실적 배당(이용고배당)이 최우선 배당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생협은 전체 배당의 50% 이상을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
 - 2016년 조합법인 유형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출자자 배당과 이용고배당이 구분되는 조합법인 중 수협과 산림조합에서 출자자 배당액이 이용고배당액보다 크게 나타남
 - 총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출자금액 규모 또는 배당률에 따라 출자자 배당총액은 달라질 수 있음

〈표 1〉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여부

배당 유형	조합법인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순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미허용	신용협동조합
배당관련 미규정	업연초생산협동조합

- (지원수준의 적절성)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은 다른 유형의 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그 활동영역이 비경제적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
 - 동 법인들은 배당을 시행하지 않으며,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동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

-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줄 뿐만 아니라 배분이익에 대해 개인소득단계에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 조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와 함께 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함께 적용
- (외국과의 비교)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소득 단계에서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조합원 지원을 위해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단계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득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
 - 우리나라는, 법인단계 과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율과세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의 개인소득세 부담도 비과세하여 조합법인을 통한 소득의 세부담을 크게 축소

〈표 2〉 주요국의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국 가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배당 손금산입	
			이용고배당	출자금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국	×	×	○	×
미국	×	×	○	○(농업)

출처: 저자 작성

-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재정사업으로 2017년 4건의 유사사업이 있으나 동 제도와의 중복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유사 재정사업의 규모는 2017년 843억원으로 농협 구조개선, 수산업 인프라 구축, 새마을금고 건전성 지도·감독,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성

<표 3>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단위: 백만원)

세부 재정사업명	예산규모		중복성 평가
	2016	2017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63	100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및 해외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님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69,520	58,345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시 부족자본금 충당 금융채권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농협활동 또는 조합원 지원 목적과의 연관성 높지 않음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6,954	14,915	조합의 감사지원, 통계조사,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등의 보조사업(20~100%)으로 전반적인 수산업 지원성격이 크며, 개별조합 지원과의 중복은 감사지원 정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8,357	10,936	중소기업중앙회 운영비 보조가 대부분(2016년 100%)이며 협동조합 활성화의 경우 중복의 여지가 있으나 비용 부족분 지원일 경우 조세지원과 차별화됨
합계	184,894	84,296	

자료: 농림부, 해수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 (효과성)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과세특례의 사업효과 분석과 함께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공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 분석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상호비교 분석에서 당기순이익 규모는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 상호 비교분석에서 자본투입량을 고려한 순이익률을 지표로 활용할 경우, 2011~2013년까지는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2014~2015년에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추정
 - 구체적으로 2011~2013년의 경우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1.0~1.6%p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2015년의 경우에는 비교법인의 순이익률이 1.2~6.2%p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소규모 조합법인에 이런 경향이 심하며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 개선속도가 느린 것은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

<표 4>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특례로 인한 성과지표 비교 분석

	2011	2012	2013	2014	2015
(A) 당기순이익의 평균 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464.31***	445.06***	485.39***	240.34	295.54***
표준오차	77.24	33.94	27.38	218.73	81.72
t-값	6.01	13.12	17.73	1.10	3.62
(B) 순이익률의 평균 차이					
순이익률 차이	1.21***	0.90***	1.57***	-1.23***	-6.20***
표준오차	0.35	0.34	0.36	0.46	0.53
t-값	3.45	2.65	4.35	-2.69	-11.63

주: ***, **, *는 1%, 5%, 그리고 10%의 통계적 유의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

- 법인세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로 나누어 분석하면 조합법인 지원이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혼합적 정부지출(소비+투자)보다 우위에 있으나 취업유발효과는 떨어짐
- 정부 소비지출보다는 생산효과에서만 우위에 있으며 투자지출에 비해서는 부가가치효과와 취업효과에서 우위에 있음

<표 5>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분야	유발계수		
	(A) 생산	(B) 부가가치	(C) 취업(명)
조합법인 분야	1.743	0.833	14.499
정부소비지출	1.495	0.864	15.347
정부투자지출	2.146	0.717	13.445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1.638	0.832	14.931

주: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 최종수요 혹은 정부지출 10억원 증가 시 취업유발인원을 의미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익활동이라기보다 조합원 지원을 위한 제도
 - 특히 농수축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활동 역시 조합원 지원이 우선시되고 있음

-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1차산업 종사자로 한정된 조합법인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조세지원 수준은 불투명하고 높은 상황
 -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 대한 지원논리가 불특정다수를 조합원으로 하여 지원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새마을금고, 신협, 생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
 -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지원의 타당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단순화와 지원수준의 하향조정이 필요
 - 현재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율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인해 정확한 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의적절한 제도 개선에 어려움 존재

- 법인의 순이익률을 성과지표로 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면 2011~2013년까지는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2014~2015년에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추정
 -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순이익률 개선속도가 비교법인들에 비해 느린 것은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근거
 - 특히, 수입규모 10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법인들의 상대적 순이익률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도 개선은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의 일반과세 전환 및 이용고배당 손금산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며, 일반과세 전환의 충격을 감안할 때 단계적으로 세무조정항목 확대를 통한 점진적 접근도 고려 가능
 - 현행 당기순이익과세는 조세특례로 인한 지원규모 불투명성을 야기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향 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하므로 시급히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투명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
- 영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순이익률 개선속도가 비교법인과 유사한 일정 수입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하여 전환 가능
- 다른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점진적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세무조정항목 추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8개 항목 고려 가능
- 전반적인 지원수준 역시 외국에 비해 높으므로 향후 축소조정을 검토

목 차

I. 연구의 배경	15
II. 제도 운영 현황	19
1. 제도 개요	21
2. 제도 운영 현황	25
III.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43
1. 미국	45
2. 일본	46
3. 영국	47
4. 독일	47
5. 프랑스	48
6. 이탈리아	48
7. 소결	49
IV. 조세지원의 타당성	71
1. 정책 목적과 대상설정의 타당성	73
2. 정책수단의 적절성	91
3. 지원수준의 적절성	94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97
V. 효과성 분석	99
1. 조합법인 규모와 성장에 미친 효과 검증	101
2.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추정	114
3.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 추정	126

VI. 세무조정 항목 확대 가능성	131
1. 가산항목 조정	135
2. 차감항목 조정	137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39
참고문헌	146
<부 록>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FGI 결과	147

표 목 차

<표 II-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21
<표 II-2>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3
<표 II-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23
<표 II-4> 제도 연혁	24
<표 II-5>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추이	25
<표 II-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추이	26
<표 II-7> 조합법인의 수입금액별 분포	27
<표 II-8>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추이	29
<표 II-9>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 및 비중	31
<표 II-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32
<표 II-11>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33
<표 II-12>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34
<표 II-13> 조합법인의 수입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5)	36
<표 II-14> 조합법인 유형별 감면금액 추정	37
<표 II-15> 조합법인 유형별 평균감면금액 추정	38
<표 II-16>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구성	39
<표 II-17>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비율	40
<표 II-18>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비율	40
<표 II-19>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추이와 비교법인과의 상대비율	41
<표 III-1> 주요국의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50
<표 III-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51
<표 IV-1>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사업내용	76
<표 IV-2> 농협조합의 지출구조(2016)	82
<표 IV-3> 수협조합의 지출구조(2016)	83

<표 IV-4> 산림조합의 지출구조(2016)	84
<표 IV-5> 신용협동조합의 지출구조(2016)	85
<표 IV-6> 새마을금고 사업구조(2016)	86
<표 IV-7> 한살림 서울생협 사업구조(2016)	87
<표 IV-8> 한살림 성남용인생협 사업구조(2016)	88
<표 IV-9>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90
<표 IV-10>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여부	92
<표 IV-11>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이익금 처분 규정	93
<표 IV-12> 세제지원 대상 법인별 사업대상과 조세지원제도	97
<표 IV-13>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98
<표 V-1>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추이	102
<표 V-2> 조합법인별 매출액 추이	104
<표 V-3> 조합법인별 당기순이익 추이	105
<표 V-4> 분석에 활용된 비특례법인	106
<표 V-5>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 비교	109
<표 V-6>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특례로 인한 성과지표 비교 분석	113
<표 V-7>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추이와 비교법인과의 상대비율	114
<표 V-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업태별 분포	120
<표 V-9>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122
<표 V-10>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I	123
<표 V-11>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II	124
<표 V-12>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종합	125
<표 V-13> 과세특례 조합법인 납부세수 추이	127
<표 V-14> 조합법인별 과세특례 규모 추이	128
<표 V-15> 조합법인별 평균 과세특례 규모 추이	129
<표 VI-1> 잠재적 세무조정 항목의 성격별 구분	134

그림 목 차

[그림 II-1] 조합유형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35
[그림 V-1]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 분포 비교	111
[그림 V-2]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순이익률 분포 비교	112
[그림 V-3]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116

I. 연구의 배경



I. 연구의 배경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
 - 이의 판단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에서 동 조항이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
 -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복리증진과 거래관계자들의 편익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제도
 - 실제 과세특례대상인 조합법인은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온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대부분으로 법인의 형태와 함께 구성원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진 것임

- 지원 필요성이 있는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 비용과 세부담을 낮춰줌으로써 다른 영리법인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조합법인의 조직규모가 취약하여 기장능력이 없고 전문적 세법지식이 결여된 소규모 법인에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 세법에서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규정

-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심층평가의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15년 기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규모는 1,616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심층평가 시행기준 3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당면 심층평가 대상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는 제도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정으로서 조세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것임
 - 실제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

- 구체적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검토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제135조 제5항)에서 규정된 다음의 내용
 - 조세특례제도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 타당성에 대한 분석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본 연구의 연구방향은 심층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 선행연구들의 방법론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증
 -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해서는 다른 비영리단체, 공익단체들과의 법률상 의무 등을 바탕으로 형평성 차원과 공익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실제 활동실적 등을 바탕으로 평가

Ⅱ. 제도 운영 현황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납세행정 부담을 완화
 - 현재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
 - 두 번째는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낮추어 줌
 - 기본 법인세율 10%/20%(2억~200억원)/22% 대신 9%/12%(20억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

<표 II -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단위: %)

일반법인		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2억원	10	~ 20억원	9
2억 ~ 200억원	20	20억원 초과	12
200억원 초과	22		

- 조정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원대상 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법인의 법인세액은 당기순이익에 구체적으로 지정한 8개 조정항목상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이용
 - 이 조항이 「법인세법」 규정에 우선함
 - 다만, 해당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조특법 §72①)
 - 법인세액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액) × (9%, 12%)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동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②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 §24①)
 -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법인세법 §24②)
 -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한도 초과 금액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25①).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해당 사업월수)/12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표 II -2>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100억원 초과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6)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7)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28)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33)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19의2 제2항, §34 제3항)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운영으로 인한 조세지출, 즉 상실된 법인세수입 규모는 2015년 1,600억원 규모로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2015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세율 인상 효과 등으로 증가할 전망

<표 II -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법인세	2,172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96
계	2,172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9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4> 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8년 이전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운영 · 세율 10% 적용
1998.12.28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단일 세율: 12%
2000.12.29	- 과세방법 보완: 일부 항목 세무조정(기부금·접대비 한도초과액)
2001.12.29	- 특례대상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
2006.12.30	- 적용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수협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추가 · 단위수협이 제공받은 재무구조개선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해당 이자수입을 비용으로 계상할 때까지 과세이연
2008.12.26	- 적용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세율 인하: 12% → 9%
2013.1.1	- 적용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과세방법 보완: 세무조정 대상 확대(기부금·접대비+업무무관 경비·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4.12.23	- 적용기한 연장: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 9% → 12%
2015.12.15	- 합병기업에 대한 적용례 추가 · 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2016.12.20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

2. 제도 운영 현황

-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법인의 숫자는 2015년 귀속기준 약 4,400여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새마을금고로 1,132개로 25.5% 점유
 - 신용협동조합이 885개로 2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신고서류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조합법인, 즉 기타조합이 1,635개, 36.9% 차지

- 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 2011년 4,433개에서 등락을 거치다가 2015년 4,433개로 동일한 수준
 - 조합유형별로 살펴보면 농협과 수협은 그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농림어업부문의 조합법인이 감소추세를 보여주는데 가장 빠른 감소세는 수협으로 2011년 63개에서 2015년 6개로 축소
 - 농협의 경우에도 2011년 902개에서 2015년 688개로 감소하였으며 산림조합은 201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여 2011년과 유사한 수준
 - 반면 새마을금고는 빠르게 증가

〈표 II -5〉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추이

(단위: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433 (100.0)	4,384 (100.0)	4,483 (100.0)	4,451 (100.0)	4,433 (100.0)
농협	902 (20.3)	875 (20.0)	777 (17.3)	734 (16.5)	688 (15.5)
수협	63 (1.4)	56 (1.3)	21 (0.5)	6 (0.1)	6 (0.1)
신협	944 (21.3)	914 (20.8)	911 (20.3)	892 (20.0)	885 (20.0)
새마을금고	827 (18.7)	938 (21.4)	1,087 (24.2)	1,168 (26.2)	1,132 (25.5)
산림조합	56 (1.3)	48 (1.1)	70 (1.6)	52 (1.2)	52 (1.2)
소비자생협	- -	24 (0.5)	59 (1.3)	42 (0.9)	35 (0.8)
기타조합	1,641 (37.0)	1,529 (34.9)	1,558 (34.8)	1,557 (35.0)	1,635 (36.9)

주: 괄호 안은 구성비이며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의 수입금액규모는 2012년 58.1조원을 정점으로 소폭 하락하여 2015년에는 56.3조원 수준에 이룸
 - 조합 유형별 분포는 농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협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농협의 수입금액 비중은 2011년 59.2%로 과반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41.6% 수준으로 하락
 - 이는 전반적인 농협 수입금액 하락에 기인하는데 2011년 31.9조원에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3.4조원 수준
 - 반면 신협의 경우 수입금액이 2011년 2.7조원 규모에서 2015년 4.4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비중도 2015년 7.8%에 이룸
 - 조합의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기타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2011년 13.7조원에서 2015년 24.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도 43.4%(2015)에 이룸

〈표 II -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추이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3.9 (100.0)	58.1 (100.0)	57.6 (100.0)	57.5 (100.0)	56.3 (100.0)
농협	31.9 (59.2)	31.6 (54.4)	26.6 (46.1)	24.2 (42.1)	23.4 (41.6)
수협	1.7 (3.2)	1.8 (3.1)	0.8 (1.3)	0.1 (0.2)	0.3 (0.5)
신협	3.6 (6.7)	3.7 (6.3)	3.3 (5.7)	3.3 (5.7)	3.3 (5.8)
새마을금고	2.7 (5.0)	3.4 (5.8)	3.5 (6.1)	4.7 (8.2)	4.4 (7.8)
산림조합	0.3 (0.6)	0.3 (0.6)	0.5 (0.8)	0.4 (0.6)	0.3 (0.6)
소비자생활협	-	0.1 (0.1)	0.4 (0.7)	0.4 (0.7)	0.2 (0.3)
기타조합	13.7 (25.3)	17.2 (29.7)	22.6 (39.2)	24.5 (42.6)	24.5 (43.4)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각 조합법인의 유형에 따라 절대적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 특례신청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억원 미만의 영세 조합 법인이 30~35%, 20~100억원 35~40%, 100억원 초과 법인들이 30% 내외의 비중
 - 2010년대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조합법인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그 이상 규모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조합유형별로는 상대적으로 오랜 운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협, 수협 등이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이 높음
 - 100억원 초과 법인비중은 농협은 약 90%, 수협은 100%이며 과거 5년간 증가 추세에 있음
 - 산림조합의 경우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규모가 90%로 대부분 차지
 - 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의 경우, 수입금액 20억원 미만 법인의 비중이 높은 편
 -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새마을금고협동조합은 이 비중이 2011년 44%에서 2015년에는 30.9%로 감소 하였으며, 소비자생협 역시 20억원 이하 조합법인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 기준 37.1%에 이룸
 - 세무신고 서류상 조합법인의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운 기타조합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법인비중이 43%(20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점차 감소 하는 추세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은 2011년 20.2%에서 2015년 34.6%로 급속하게 높아짐

<표 II -7> 조합법인의 수입금액별 분포

(단위: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4,441	4,385	4,484	4,454	4,441
전체	0~20억 이하	1,535 (34.6)	1,423 (32.5)	1,584 (35.3)	1,374 (30.9)	1,434 (32.3)
	20~100억 이하	1,648 (37.2)	1,644 (37.5)	1,593 (35.5)	1,768 (39.7)	1,693 (38.2)
	100억 초과	1,250 (28.2)	1,317 (30.0)	1,306 (29.1)	1,309 (29.4)	1,306 (29.5)
계		902	875	777	734	688
농협	0~20억 이하	10 (1.1)	6 (0.7)	15 (1.9)	12 (1.6)	16 (2.3)
	20~100억 이하	102 (11.3)	88 (10.1)	74 (9.5)	85 (11.6)	58 (8.4)

		2011	2012	2013	2014	2015
	100억 초과	790 (87.6)	781 (89.3)	688 (88.5)	637 (86.8)	614 (89.2)
	계	63	56	21	6	6
수협	0~20억 이하	4 (6.3)	3 (5.4)	-	-	-
	20~100억 이하	14 (22.2)	10 (17.9)	5 (23.8)	2 (33.3)	-
	100억 초과	45 (71.4)	43 (76.8)	16 (76.2)	4 (66.7)	6 (100.0)
	계	944	914	911	892	885
신협	0~20억 이하	372 (39.4)	336 (36.8)	350 (38.4)	348 (39.0)	352 (39.8)
	20~100억 이하	527 (55.8)	523 (57.2)	517 (56.8)	504 (56.5)	485 (54.8)
	100억 초과	45 (4.8)	55 (6.0)	44 (4.8)	40 (4.5)	48 (5.4)
	계	827	938	1,087	1,168	1,132
새마을금고	0~20억 이하	364 (44.0)	347 (37.0)	477 (43.9)	327 (28.0)	350 (30.9)
	20~100억 이하	426 (51.5)	545 (58.1)	557 (51.2)	772 (66.1)	719 (63.5)
	100억 초과	37 (4.5)	46 (4.9)	53 (4.9)	69 (5.9)	63 (5.6)
	계	56	48	70	52	52
산림조합	0~20억 이하	2 (3.6)	2 (4.2)	1 (1.4)	1 (1.9)	-
	20~100억 이하	52 (92.9)	40 (83.3)	60 (85.7)	44 (84.6)	47 (90.4)
	100억 초과	2 (3.6)	6 (12.5)	9 (12.9)	7 (13.5)	5 (9.6)
	계	0	24	59	42	35
소비자생활협	0~20억 이하	-	16 (66.7)	32 (54.2)	16 (38.1)	13 (37.1)
	20~100억 이하	-	7 (29.2)	20 (33.9)	19 (45.2)	17 (48.6)
	100억 초과	-	1 (4.2)	7 (11.9)	7 (16.7)	5 (14.3)
	계	1,641	1,529	1,558	1,557	1,635
기타조합	0~20억 이하	783 (47.7)	713 (46.6)	709 (45.5)	670 (43.0)	703 (43.0)
	20~100억 이하	527 (32.1)	431 (28.2)	360 (23.1)	342 (22.0)	367 (22.4)
	100억 초과	331 (20.2)	385 (25.2)	489 (31.4)	545 (35.0)	565 (34.6)

주: 괄호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세특례 수혜 조합법인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2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

- 조합법인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2년 132.6억원에서 2015년에는 127.0억원 수준으로 소폭 감소
 - 주로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평균 금액이 하락하였는데 2011년 47.1억원에서 2015년 45.6억원으로 감소
 - 1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수입금액은 2013년 376.7억원을 기점으로 소폭 하락하여 2015년 363.5억원 수준
- 조합법인의 유형 중 수입금액이 가장 높은 유형은 수협으로 2015년 기준 433.4억원이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조합법인 유형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로 각각 36.9억원, 38.8억원 수준에 불과
 - 수협의 경우 전체 조합법인 숫자의 감소추세 속에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조합이 사라져 2015년에는 전체 6개 조합이 모두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상태이며 이들의 평균 금액은 433.4억원 수준
 - 농협의 경우에도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340억원 규모로 대규모 조합에 속하나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준
 - 신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최근 3년 36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등락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 새마을금고는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소규모 조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평균 수입금액은 2011년 5.9억원에서 2015년 11.1억원으로 증가

<표 II -8>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추이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121.61	132.59	128.48	129.15	126.99
	0~20억 이하	5.98	6.21	6.02	7.32	7.63
	20~100억 이하	47.13	47.35	46.77	45.74	45.60
	100억 초과	361.79	375.54	376.68	369.70	363.54
농협	계	353.85	361.67	341.98	329.52	340.23
	0~20억 이하	2.12	3.95	3.53	3.11	6.06
	20~100억 이하	75.91	79.37	79.69	77.64	74.43
	100억 초과	394.19	396.23	377.57	369.28	374.04

		2011	2012	2013	2014	2015
수협	계	273.87	322.54	358.23	205.21	433.39
	0~20억 이하	-	0.46	-	-	-
	20~100억 이하	60.32	57.39	60.60	54.41	-
	100억 초과	364.65	406.68	451.25	280.60	433.39
신협	계	38.09	40.32	36.04	36.53	36.86
	0~20억 이하	9.08	9.78	9.97	9.85	9.99
	20~100억 이하	44.39	44.73	43.47	42.32	41.61
	100억 초과	204.08	184.85	156.20	195.73	186.02
새마을금고	계	32.36	36.00	32.41	40.18	38.76
	0~20억 이하	5.94	5.89	5.64	10.78	11.14
	20~100억 이하	41.95	42.78	41.30	41.47	41.83
	100억 초과	181.93	182.71	179.95	164.58	157.28
산림조합	계	59.31	66.92	69.58	67.56	66.35
	0~20억 이하	12.48	8.95	0.00	0.89	-
	20~100억 이하	58.62	61.79	62.92	62.35	60.33
	100억 초과	124.29	120.46	121.73	109.83	122.96
소비자생활협	계	-	22.35	64.62	94.02	51.28
	0~20억 이하	-	5.51	6.97	6.95	8.94
	20~100억 이하	-	37.99	45.08	51.03	48.17
	100억 초과	-	182.29	384.02	409.74	171.91
기타조합	계	83.26	112.74	145.06	157.13	149.49
	0~20억 이하	4.59	4.73	4.35	4.41	4.72
	20~100억 이하	47.02	48.35	50.42	49.98	51.73
	100억 초과	327.06	384.84	418.74	412.40	393.29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특례대상 조합법인 중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손법인도 존재하는데 그 비중은 10% 수준을 상회
- 2011년 431개 조합으로 전체의 9.7%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596개, 13.4% 수준으로 증가
 - 조합유형별로는 결손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조합은 소비자생활협으로 2015년 15개로 전체의 42.9%에 달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시간에 따라 증가추세
 - 소비자생활협의 경우, 시장의 다양한 물류유통경로 중 하나로서 시장경쟁의 수준이 높기 때문

- 반면 역사가 오래된 수협, 농협은 적자조합의 비중이 각각 0%, 1.6%로 매우 낮은 수준
- 수협의 경우, 조합의 대형화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협은 등락은 있으나 낮은 수준을 유지

〈표 II -9〉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 및 비중

(단위: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431 (9.72)	546 (12.45)	666 (14.86)	520 (11.68)	596 (13.44)
농협	4 (0.44)	14 (1.60)	25 (3.22)	22 (3.00)	11 (1.60)
수협	2 (3.17)	4 (7.14)	2 (9.52)	0 (0)	0 (0)
신협	83 (8.79)	154 (16.85)	184 (20.20)	118 (13.23)	109 (12.32)
새마을금고	87 (10.53)	157 (16.74)	172 (15.82)	104 (8.90)	162 (14.31)
산림조합	9 (16.07)	8 (16.67)	16 (22.86)	7 (13.46)	8 (15.38)
소비자생활협	-	7 (29.17)	19 (32.20)	15 (35.71)	15 (42.86)
기타조합	246 (14.98)	202 (13.21)	248 (15.92)	254 (16.31)	291 (17.80)

주: 괄호안은 전체 법인중 결손법인의 비중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흑자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1년 3.1조원에서 경기침체에 따라 2012년 2.6조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5년 2.9조원 수준으로 회복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협으로 2015년 1.0조원으로 전체의 34.8%를 점유
 - 농협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였다가 2014년 기점으로 반등
- 새마을금고와 기타조합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 조합법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중

<표 II -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0,823 (100.0)	25,914 (100.0)	26,115 (100.0)	28,147 (100.0)	28,709 (100.0)
농협	13,356 (43.3)	11,746 (45.3)	9,675 (37.0)	9,289 (33.0)	9,991 (34.8)
수협	982 (3.2)	546 (2.1)	236 (0.9)	33 (0.1)	133 (0.5)
신협	3,622 (11.8)	2,651 (10.2)	2,608 (10.0)	2,839 (10.1)	3,171 (11.0)
새마을금고	4,587 (14.9)	3,515 (13.6)	4,992 (19.1)	6,607 (23.5)	5,349 (18.6)
산림조합	139 (0.5)	137 (0.5)	163 (0.6)	185 (0.7)	189 (0.7)
소비자생활협	- (0.0)	10 (0.0)	75 (0.3)	48 (0.2)	20 (0.1)
기타조합	8,137 (26.4)	7,308 (28.2)	8,366 (32.0)	9,146 (32.5)	9,857 (34.3)

주: 괄호 안은 구성비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7.5억원(2015) 수준이며 이는 2012년 6.8억원 수준에서 증가하는 추세
 - 평균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협동조합은 수협으로 2015년 22.2억원에 이르며 가장 낮은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으로 1억원에 미치지 못함
 - 소비자생활협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일 경우 당기순이익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야 2.9억원(2015) 수준에 이룸
 - 농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1년 이후 12~15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4.8억원 규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억원 내외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이며 100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여 14~16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 달성

<표 II - 11>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구분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7.70	6.75	6.84	7.16	7.48
	0~20억 이하	2.39	1.70	2.12	1.53	1.26
	20~100억 이하	4.76	3.44	3.98	4.67	4.47
	100억 초과	16.64	14.85	14.41	15.10	16.21
농협	계	14.87	13.64	12.87	13.05	14.76
	0~20억 이하	2.22	2.05	1.70	1.72	3.23
	20~100억 이하	3.29	3.38	3.35	3.93	3.34
	100억 초과	16.47	14.85	14.07	14.44	16.10
수협	계	16.10	10.51	12.40	5.49	22.17
	0~20억 이하	12	6.43	-	-	-
	20~100억 이하	4.26	2.61	2.66	2.80	-
	100억 초과	19.97	12.59	15.00	6.83	22.17
신협	계	4.21	3.49	3.59	3.67	4.09
	0~20억 이하	1.67	1.47	1.41	1.26	1.32
	20~100억 이하	4.75	3.74	4.13	4.09	4.36
	100억 초과	16.26	11.80	11.84	16.05	17.88
새마을금고	계	6.20	4.50	5.46	6.22	5.52
	0~20억 이하	4.21	2.98	3.85	2.19	1.68
	20~100억 이하	5.58	3.76	4.74	5.73	5.21
	100억 초과	29.20	24.01	24.98	27.81	24.26
산림조합	계	2.96	3.41	3.02	4.11	4.29
	0~20억 이하	4.73	0.42	-	-	-
	20~100억 이하	2.66	3.06	2.42	3.19	3.73
	100억 초과	7.49	5.84	6.51	9.12	8.62
소비자생활협	계	-	0.59	1.88	1.77	0.98
	0~20억 이하	-	0.20	0.28	0.46	0.66
	20~100억 이하	-	0.60	1.12	2.00	0.85
	100억 초과	-	4.08	7.37	2.76	2.90
기타조합	계	5.83	5.51	6.39	7.01	7.33
	0~20억 이하	1.78	1.19	1.33	1.32	0.97
	20~100억 이하	4.58	2.83	3.13	3.54	3.52
	100억 초과	15.27	14.76	14.23	14.43	15.30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하락하였다가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2년 4.61%를 저점으로 2015년 5.30%로 회복
- 당기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합법인이 높고 규모가 커감에 따라 하락하는 구조
 - 2015년 기준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15.6%인 데 반해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은 4.45%로 큰 격차

- 조합법인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추이는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반면 그 이상 규모에서는 안정적인 추세
 - 20억원 이하 규모의 당기순이익률은 2011년 39.3%에서 2015년에는 15.6%로 급격하게 하락
 - 반면 100억 초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2011년 4.6%에서 낮아졌다가 회복하여 2015년에는 4.5% 수준으로 유사

〈표 II -12〉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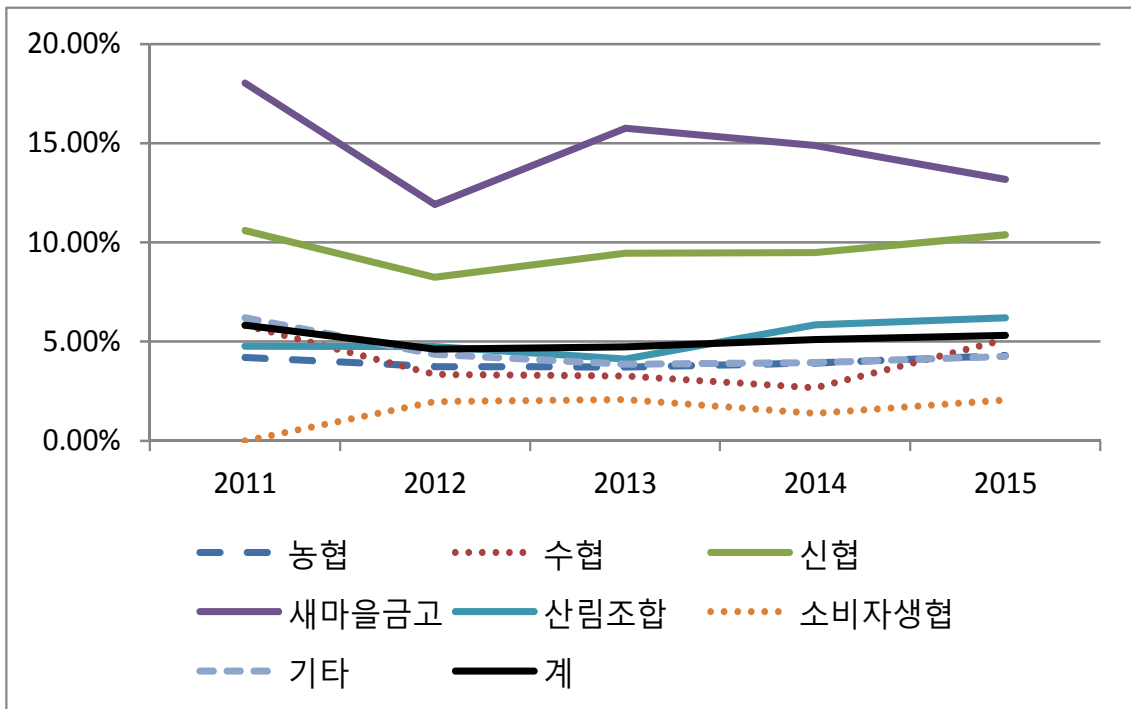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5.82	4.61	4.74	5.10	5.30
	0~20억 이하	39.31	27.28	34.32	19.65	15.61
	20~100억 이하	9.94	7.09	8.38	10.11	9.64
	100억 초과	4.59	3.93	3.79	4.06	4.45
농협	계	4.19	3.75	3.72	3.92	4.30
	0~20억 이하	83.76	38.45	62.48	50.73	57.66
	20~100억 이하	4.32	4.21	4.17	5.00	4.48
	100억 초과	4.18	3.73	3.71	3.89	4.28
수협	계	5.83	3.34	3.25	2.68	5.12
	0~20억 이하	-	1399.09	-	-	-
	20~100억 이하	6.85	4.79	3.77	5.14	-
	100억 초과	5.47	3.18	3.23	2.44	5.12
신협	계	10.60	8.23	9.45	9.50	10.37
	0~20억 이하	17.93	14.93	13.78	12.55	12.98
	20~100억 이하	10.63	8.28	9.50	9.60	10.34
	100억 초과	8.07	6.32	7.57	8.11	9.61
새마을금고	계	18.02	11.90	15.76	14.87	13.17
	0~20억 이하	72.23	53.97	73.89	20.50	15.01
	20~100억 이하	13.11	8.52	11.19	13.59	12.21
	100억 초과	16.05	12.73	13.60	16.82	15.43
산림조합	계	4.77	4.76	4.12	5.85	6.21
	0~20억 이하	37.93	2.35	-	-	-
	20~100억 이하	4.34	4.75	3.73	5.06	6.00
	100억 초과	6.03	4.85	5.32	8.31	7.01
소비자생활협	계	-	1.98	2.08	1.37	2.05
	0~20억 이하	-	3.04	3.31	7.62	5.92
	20~100억 이하	-	1.57	2.41	3.94	1.78
	100억 초과	-	2.24	1.92	0.61	1.49
기타조합	계	4.36	3.85	3.93	4.25	7.33
	0~20억 이하	24.49	27.30	26.59	18.24	0.97
	20~100억 이하	5.75	6.16	7.05	6.66	3.52
	100억 초과	3.80	3.37	3.46	3.89	15.30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유형별로 당기순이익률은 큰 격차를 보여주는데 금융업을 영위하는 새마을금고, 신협의 당기순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새마을금고로 2015년 13.2% 수준이며 신협도 10.4% 수준으로 상품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자생협의 2.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생산자들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는 농협, 수협, 소비자생협 등이 금융관련 조합법인에 비해 당기순이익률이 낮음

[그림 II -1] 조합유형별 당기순이익률 추이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총 부담세액/과세표준)은 2015년 9.7%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규모가 큰 수협이 가장 높은 10.3%, 농협이 10.0%
 - 당기순이익 규모가 작은 산림조합이 9.0%로 가장 낮음
 - 수입규모별 평균실효세율은 수입규모 100억 초과시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9.99%로 나타났으며 100억이하의 경우에는 낮은 명목세율인 9%와 유사

<표 II -13> 조합법인의 수입규모별 평균실효세율(2015)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전체	9.72	10.03	10.34	9.15	9.29	9.03	9.20	9.83
- 20억 이하	9.07	9.23	-	8.92	9.04	-	9.64	9.20
- 20~100억	9.02	8.97	-	8.98	9.04	9.02	9.00	9.03
- 100억 초과	9.99	10.05	10.34	9.64	9.92	9.00	9.00	9.97

주: 평균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합법인에 제공하는 조세특례규모의 추정은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세율 적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나, 추정의 어려움이 있는 당기순이익과세 효과를 제외한 저율과세 효과만을 추정

- 즉 현재의 당기순이익 수준에서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산출세액과 실제 산출세액의 차이를 감면금액으로 추정
 -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이월공제 등이 허용되지 않아 실제 감면금액과는 차이
 -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통일된 방법으로 예측 또는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함
- 실적자료의 조합법인 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

□ 2015년 기준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금액은 2,362억원 규모로 2014년의 2,47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

-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이전 3천억원 이상 규모에서 2012년부터 2천억원 규모로 감면금액이 하락한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
- 조합법인 유형별로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감면액이 큰 편
 - 2015년 기준 농협은 867억원 규모이며 새마을금고는 415억원 규모
- 감면금액의 추이는 농협과 수협의 경우 급격한 감소 추세
 - 농협과 수협의 감면금액은 2011년 각각 1,525억원, 114억원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여 2015년에는 867억원, 12억원 수준에 불과
-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감면금액은 2012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
 - 2012년 각각 266억원, 182억원 규모에서 2015년에는 415억원, 230억원 규모로 증가

□ 조합법인당 평균 감면액은 2012년 이후 약 5천만원 수준을 유지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협 및 수협의 평균감면액이 각각 1.3억원, 2.0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비자생협이 200만원 정도
-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수협의 평균감면액은 2012년 0.9억원에서 2015년 2.0억원으로 증가

<표 II -14> 조합법인 유형별 감면금액 추정

(단위: 억원)

구분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3,244.4	2271.3	2287.6	2478.1	2361.6
	0~20억 이하	235.4	108.4	162.0	85.1	60.7
	20~100억 이하	621.1	312.8	367.4	542.8	485.6
	100억 초과	2,387.9	1,850.2	1,758.2	1,850.2	1,815.3
농협	계	1,524.7	1,124.7	918.3	884.7	866.8
	0~20억 이하	1.2	0.5	1.1	0.9	3.6
	20~100억 이하	21.1	16.5	13.9	21.0	10.7
	100억 초과	1,502.4	1107.7	903.3	862.8	852.5
수협	계	113.6	50.7	22.3	2.7	11.8
	0~20억 이하	5.5	1.8	-	-	-
	20~100억 이하	4.5	1.3	0.6	0.3	-
	100억 초과	103.6	47.6	21.8	2.3	11.8
신협	계	311.9	182.0	180.1	200.8	230.1
	0~20억 이하	29.2	17.8	14.5	13.0	14.9
	20~100억 이하	202.0	106.1	117.8	126.7	135.8
	100억 초과	80.7	58.2	47.7	61.1	79.4
새마을금고	계	447.5	265.7	396.2	542.0	414.8
	0~20억 이하	114.1	53.4	103.9	31.0	19.2
	20~100억 이하	201.7	117.1	167.4	316.2	254.2
	100억 초과	131.7	95.2	124.8	194.8	141.4
산림조합	계	9.5	8.4	9.8	12.4	12.9
	0~20억 이하	0.8	0.0	0.0	0.0	-
	20~100억 이하	7.2	5.7	5.7	6.8	9.2
	100억 초과	1.5	2.7	4.1	5.6	3.7
소비자생협	계	-	0.3	4.8	1.9	0.6
	0~20억 이하	-	0.0	0.0	0.0	0.0
	20~100억 이하	-	0.0	0.5	1.1	0.1
	100억 초과	-	0.2	4.3	0.8	0.4
기타조합	계	837.2	639.4	756.2	833.5	824.5
	0~20억 이하	84.6	34.9	42.4	40.1	23.0
	20~100억 이하	184.6	65.9	61.6	70.6	75.6
	100억 초과	568.0	538.6	652.2	722.8	725.9

주: 감면금액 = (일반법인 가정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

일반법인 가정시 세액산출은 세무조정을 감안하지 않고 세율차이만 반영(2011년 10%/22%(2억 초과), 그 이후로는 10%/20%(2~200억)/22% 적용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경우 신고세액 이용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표 II -15> 조합법인 유형별 평균감면금액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계	73	52	51	56	53
	0~20억 이하	15	8	10	6	4
	20~100억 이하	38	19	23	31	29
	100억 초과	191	140	135	141	139
농협	계	169	129	118	121	126
	0~20억 이하	12	9	8	8	23
	20~100억 이하	21	19	19	25	18
	100억 초과	190	142	131	135	139
수협	계	180	91	106	45	197
	0~20억 이하	138	59	-	-	-
	20~100억 이하	32	13	11	17	-
	100억 초과	230	111	136	59	197
신협	계	33	20	20	23	26
	0~20억 이하	8	5	4	4	4
	20~100억 이하	38	20	23	25	28
	100억 초과	179	106	108	153	165
새마을금고	계	54	28	36	46	37
	0~20억 이하	31	15	22	10	5
	20~100억 이하	47	21	30	41	35
	100억 초과	356	207	236	282	225
산림조합	계	17	18	14	24	25
	0~20억 이하	41	0	0	0	-
	20~100억 이하	14	14	9	15	20
	100억 초과	73	44	46	80	75
소비자생활협	계	-	1	8	5	2
	0~20억 이하	-	0	0	0	0
	20~100억 이하	-	1	3	6	1
	100억 초과	-	25	61	11	8
기타조합	계	51	42	49	53	50
	0~20억 이하	11	5	6	6	3
	20~100억 이하	35	15	17	21	21
	100억 초과	172	140	133	133	128

주: 평균감면금액 = (일반법인 가정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조합법인 수
 일반법인 가정시 세액산출은 세무조정을 감안하지 않고 세율차이만 반영(2011년 10%/22%(2억 초과), 그 이후로는 10%/20%(2~200억)/22% 적용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경우 신고세액 이용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조세특례 조합법인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유사 업종 및 유사 수입금액 규모의 비교집단을 추출하여 분석

- 2015년 기준 특례 조합법인은 4,433개이며 비교법인으로 3,169개 추출¹⁾
- 동일유형 조합법인이 대부분 조세특례를 활용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교법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됨

<표 II -16>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구성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례법인	농협	902	875	777	734	688
	수협	63	56	21	6	6
	신협	944	914	911	892	885
	새마을금고	827	938	1,087	1,168	1,132
	산림조합	56	48	70	52	52
	소비자생활협	-	24	59	42	35
	기타	1,641	1,529	1,558	1,557	1,635
	계	4,433	4,384	4,483	4,451	4,433
비교법인	농협	5	4	6	6	7
	수협	1	2	1	1	-
	신협	6	3	2	1	1
	새마을금고	37	51	67	35	45
	산림조합	2	4	3	2	2
	소비자생활협	-	15	43	51	34
	기타	4,189	4,327	3,720	3,354	3,080
	계	4,240	4,406	3,842	3,450	3,169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수입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특례법인의 수입금액이 비교법인에 비해 2배 정도 큰 샘플로 구성

- 2015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는 비교법인의 25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법인이라 할 수 있음
- 평균수입금액의 증가추세는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상당히 낮음

1) 국세청에 조세특례 조합법인의 동일업종으로 유사 수입금액(95~105%) 수준인 비교법인 추출을 시도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상 목표치보다 작은 비교집단 추출

- 비교를 위해 수입금액 규모별로 재분류할 경우, 평균 수입금액의 변화는 20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특례법인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외 경우, 성장세가 현저히 낮음
 - 이는 소규모 특례법인의 성장에 조세특례가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줌
 - 반면 20~100억원 이하 규모의 경우, 비슷한 성장추세를 보여 조세특례의 성장 효과는 발견하기 어려움

〈표 II -17〉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비율

(단위: %)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례법인/ 비교법인	0~20억 이하	87	83	78	96	111
	20~100억 이하	106	102	104	102	102
	100억 초과	200	22	33	18	12
	계	477	190	210	231	258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비교법인과 특례법인의 당기순이익비율은 전반적으로 수입금액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줌
 - 2015년 기준 동 비율은 174%로 수입금액 비율 258%에 비해 크게 낮음
 - 이는 비교법인에 비해 특례법인의 수익성이 떨어짐을 의미
 -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하 법인들의 경우 두 비율의 격차가 30~40%p에 달하나 100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그 격차가 7%p로 상대적으로 작음
 - 평균 당기순이익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순이익비율이 낮아져 특례법인의 순이익 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2014년부터 특례법인의 상대적 순이익 비율이 크게 낮아져, 특례법인의 순이익창출 매커니즘의 변화 가능성 의심

〈표 II -18〉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비율

(단위: %)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례법인/ 비교법인	0~20억 이하	328	134	272	110	69
	20~100억 이하	148	115	140	108	70
	100억 초과	48	167	121	14	19
	계	259	303	329	151	174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의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상대비는 특례가 조합법인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
 - (특례법인/비교법인)의 비율은 2015년 82%로 상대적으로 특례법인의 수익성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은 상황
 -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20~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비율이 각각 62%, 69%로 비교법인에 비해 낮은 수익성을 보임
 - 이러한 낮은 수익성은 2015년에 나타난 현상으로 그 이전 2011~2014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인 것에서 큰 변화를 보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상대적 수익성은 하락추세
 - 반면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인 조합법인의 수익성은 비교법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 상대비율이 2015년 226%로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
 - 이는 소규모 조합법인들이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대규모 조합법인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
 - 조합법인이 일반법인과 달리 수익성을 추구할 유인이 낮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과거 사례는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줌

<표 II -19>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추이와 비교법인과과의 상대비율

(단위: %)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례법인	0~20억 이하	39.31	27.28	34.32	19.65	15.61
	20~100억 이하	9.94	7.09	8.38	10.11	9.64
	100억 초과	4.59	3.93	3.79	4.06	4.45
	계	5.82	4.61	4.74	5.10	5.30
비교법인	0~20억 이하	9.65	15.84	9.34	17.27	25.19
	20~100억 이하	7.09	6.37	6.16	9.46	14.01
	100억 초과	19.91	7.02	0.88	4.41	1.96
	계	10.50	7.96	2.67	6.46	6.46
특례법인/ 비교법인	0~20억 이하	408	172	367	114	62
	20~100억 이하	140	111	136	107	69
	100억 초과	23	56	430	92	226
	계	55	58	178	79	82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1. 미국

- 미국의 조합법인(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
 - 다만 조합원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이용고배당(patronage dividend)과 단위당 자본적립배당(per unit retain allocation)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
 -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
 - 예외적으로 농업 관련 조합이 해당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
 - 이러한 조항의 적용대상은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및 판매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
 - 김완석·심태섭(2012)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자본조달하며 운영하는 협동조합

-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순이익을 의미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이익분배, 즉 이용고배당에 대하여는 조합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손금산입), 활동조합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유주 단계에서만 과세

- 세제혜택을 받는 이용고배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김완석·심태섭, 2012)
 - 활동조합원이 이용한 해당 조합의 서비스 양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 약정에 의하여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해당 조합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결정)
 - 해당 조합이 활동조합원에 대한 사업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의하여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단위당 자본적립배당은 조합원이 조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용고배당금과 유사하게 손금산입
 - 회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금액이나 물량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이를 해당 조합에 단위당 자본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

2. 일본

- 일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과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달리 저율과세를 시행중
 - 여기서 연합회는,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의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의미
 - 2017년 기준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은 30.0%(지방세 포함)인 데 반해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을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800만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9%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는 기준조세체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조합법인의 이용고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보소득의 특별공제도 허용하고 있음
 - 이용고배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김완석·심태섭, 2012)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그 조합원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야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그 조합원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유보소득 특별공제는 조합 중 출자금이 1억엔(소비생활협동조합과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1천만엔)이하인 것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특별공제 허용
 -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경우, 유보금액의 32%까지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영국

- 영국은 조합법인(Cooperative)의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비법인형태의 조직으로 법인세법을 따르게 되어있음(김완석·심태섭, 2012)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저율과세, 당기순이익과세와 같은 특례는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목적상 이익창출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는 금액에 따른 이용고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금으로 산입
 - 예를 들어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법인에 지불한 월세(rent)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되며, 조합이 보유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조합법인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세법상 특례는 없음

4. 독일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최근 개정 2006)에 의해 협동조합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시 자산청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름

-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용고배당은 가능하며, 세무상으로 손금산입
 - 다만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은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허용

- 세무상으로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장비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제품의 가공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수익의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면세

5. 프랑스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 또한 농업이나 공예품분야의 조합의 경우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게 구성
 - 비조합원의 경우,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세무상 일반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 면제
 -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개인소득과세 체계를 따름
- 이용고배당의 경우 조합원이 최대주주인 소비자조합과 금융조합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 가능
-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대해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출자금 배당은 경제부에서 고시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이자형태로 지급가능

6. 이탈리아

- 조합법인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 규정

- 이는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 조합(other cooperatives)로 구분
- 세무상 처리는 이용고배당을 제외하고 일반법인과 동일
 - 이용고배당은 이용고에 따른 환급(refund)으로 규정하며 손금산입이 가능
 - 환급과 구분되는 배당은 기타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출자금 지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제상 혜택은 없음

7. 소결

- 주요 선진국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단계가 아닌 소득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
 -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합원과의 거래실적에 비례한 배당, 즉 이용고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의 세부담을 면제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개인 소득자 단계에서만 과세
 - 반면 우리나라는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저율과세와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하고 있음
 - 저율과세는 일반적인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주요국 중 일본에서만 시행
- 한편 출자금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은 호주, 미국 정도의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출자금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은 자본투자자에 대한 지원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농업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 호주의 경우, 조합법인의 인정범위를 매해 사업의 90% 이상을 조합원과 거래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자본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

〈표 III-1〉 주요국의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국 가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배당 손금산입	
			이용고배당	출자금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 국	×	×	○	×
미 국	×	×	○	○(농업)

출처: 저자 작성

〈표 III-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단위: %)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율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호주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목적을 위한 회사 중 매 해 사업의 90%를 조합원들과 거래하는 경우 조합법인으로 인정 - 조합원들의 소비와 필요에 따른 재화의 구입 -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판매 - 조합원들의 생산품을 저장, 판촉, 포장 및 가공 -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조합원들의 주거 또는 주거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상호신용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의 예금 및 대출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또는 보너스를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오스트리아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관련 특별법은 없으며 1873년 제정(2008년 최근 개정)된 일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별조합의 정관에 의해 자치적으로 규제 - 따라서 이용고배당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금액이 조합원과의 거래 금액의 1% 이내 이고 해당 사업 연도 초에 이용고 배당에 대한 사전 공지가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벨기에	34.0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근거법은 company code of 1990이며 가변적 자본과 회원을 가진 회사로 규정을 - 세법상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법인 25,000개 중 400개에 불과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불가하며, 가능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National Cooperative Council과 조합법인으로서는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금에 대한 이자(이자율 6% 한도)의 배당 소득으로 재분류 금지, 2) 원천세의 면제, 3) 법인세 감면, 4) 조합원에 대한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됨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증양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캐나다	15.0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연방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성상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1차 상품을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원료, 기자재 또는 조합원을 위한 생활용품 구매 공급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수행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이전 - 고객들과 의 계약시 이용 고배당의 가능성을 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되나, 모든 납세자(협동조합을 포함)에게 허용되는 공통사항 - 비회원고객에게도 이용고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고객과 비회원고객 사이의 배당의 차이가 나면 손금한도를 회원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비회원고객에게 지급한 이용고배당의 합계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자체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처음 50만 캐나다달러의 소득까지는 여타 중소기업인 11%를 적용 - 배당처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감면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이익을 배당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양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칠레	24.0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the article 47 of the LGC)을 따르는 이윤공유 목적의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Decree 502(1978년 개정, 2002년 개정)에 의해 협동조합을 규정 - 이러한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또는 할당 저축에 대한 이자 지급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지만, 조합법인은 조로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이자 및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체코	19.0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체(sec. 221, par. 1, Commercial Code)이며 주석조합과 저축 및 신용조합에 대한 특별법만 존재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위임 - 신용조합은 허용되나 채보험 및 은행 업무는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지나 제세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하나 제세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덴마크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일반적 정의는 Consolidate Act on Certain Commercial Undertakings(No651 of 15.6.2006)에 의해 규정되나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기타사항 참조	기타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 -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율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경우 협동조합의 순가치의 4-6% 를 적용하여 과 세대상소득을 결 정하고 이에 14.3%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 조건1) - 최소 10명의 조 합원들이 구매자 또는 공급자로서 조합법인의 사업 에 참여 조건2) - 비조합원과의 거 래를 통한 매출 액이 전체 매출 액의 25%를 초 과하지 않음 조건3) - 이윤에서 출자 또는 투자금 비 율에 따라 지급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에스토니아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일반적 규정은 the general law on commercial association of 2001에 따르며 특별법으로는 신용조합과 건물 및 아파트 조합에 관한 법이 있음 - 일반법에서 조합의 해산 전까지는 배분할 수 없는 법적 강제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중앙은행의 정상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하고 남은 잉여를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재투자 위해 유보
핀란드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일반법(the general law on Cooperatives of 2001)에 의해 협동조합 관련 강제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고 일반법인과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른 배당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양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프랑스	34.4	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주요목적은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 농업이나 공예품분야의 조합에 관한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서 법체계가 복잡 -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제한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윤고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가능하며 조합원이 최대주주인 소비자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에서 고시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형태로 지급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 과세대상 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법인세 면제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개인소득 과세체계를 따름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독일	15.8	30.2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최근 개정 2006)에 의해 협동 조합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 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 청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하고 손금 산입하나,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손금산입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장비의 공동 사용, 농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 제품의 가공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수익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면세
그리스	29.0	29.0	-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 조합법인 의 형성 및 운영을 관장하나 그 리스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직체로 볼 수 없음 - 대표적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	없음	아니오	-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의 잉여 (surplus, 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에 대한	- 지방조합법인 잉여 배당 가능하며 이익(profits, 비조합원 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은 투자자에 유 리한 경우 가능	- 지방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하고 조합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증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헝가리	19.0	19.0	<p>조합법인과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 인으로 구분</p> <p>- 자연인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부조, 문 화적 도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법인은 fellowship fund에 이익금의 일정부 분을 적립할 수 있고 이익금의 6.5%를 한도로 적립금은 면세</p>	없음	아니오	<p>이용고배당은 가 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p>	<p>민법상의 조합법인 이익의 50%를 배분 가능</p>	<p>- 지방조합법인의 감면사항은 1) 유보한 잉여에 대한 법인세 면제 2) 몇몇 거래에 대한 인지세 면제 3) 자본축적에 대한 비과세 4) 다양한 경우의 VAT비과세</p>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아일랜드	12.5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893-1978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 및 Credit Union Act 1997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그러나 협동조합의 요건, 업종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 리베이트, 배당, 보너스 등은 손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과세 대상소득에서 공제 - 주 거주자가 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이탈리아	27.4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서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 조합(other cooperatives)로 구분됨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환급(Refund)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산입 - 환급은 배당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조합의 경우에 한해서 출자금 지분에 따라 배당할 수 있지만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일본	22.6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poration tax law Sch. 3에 열거된 조합법인과 연합회(예, 농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19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이용고에 따른 배당 손금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인의 경우 최소 8백만엔까지의 소득은 19%로 과세하므로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세율은 기준조세 체계 안에 있음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지방 포함 중양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룩셈부르크	22.5	29.2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 하지만,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 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 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유보할 경우 유보금액의 32% 까지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상 손금으로 산입
		- 협동조합 설립근거법은 the law on commercial companies of 1915이며 기본적인 사항 이 외의 적립금, 이용고배당 등의 구체적 사항들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기관 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유목적사 업에 대해 비과세 - 농협관련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농업농장과 기계의 공동사용 과 농산품의 판매 또는 가공에서 받 는 이익에 한 해서만 비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양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멕시코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Cooperativas)과 상회회사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 - 기본적으로 공유된 노동과 서비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상업화, 유통, 저장 및 수송을 위해 개인들의 의해 조직된 사업체로 규정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다음의 조세유인이 시행되고 있음 - 감독기관에 의해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조합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는 법인세 비과세하고, 모든 소득은 조합원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2006년 개편) - 2014년에 발생한 는 조합법인 소득에 한해 조합원에게 배분되지 않고 2년간 유보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3년째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 시행(2014 개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네덜란드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구체적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상호보합협동조합(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mutual))에 대해서는 특정규제가 적용되거나 여타특별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한해 이용고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허용 - 이용고배당 이외의 회계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인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과 전기오류 수정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규정
뉴질랜드	28.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 Company Act 1996에 따라 협동조합 요건을 갖춘 회사가 Company Act 1992에 의해 법인화된 경우 조합법인은 60%의 조합원이 현재 제화와 용역을 조합법인에 공급하거나 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어야 함 - 농업분야부터 택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용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조합법인의 과세는 일반법인과 동일 - 조합과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리베이트는 개인소득세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율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노르웨이	25.0	25.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건물 및 주택조합과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용고배당, 투자자금에 대한 보상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 과세대상 조합원 인의 경우 이용 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5년 만기 국채 이자 율보다 3%포인트 이 상 높지 않은 이자 율로 보상가능하며, 세무상 처분은 일 반법인과 동일	- 영리조직으로 분 류됨에도 불구하고 고 세법상 비영 리조직으로 구분 되는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 서는 비과세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폴란드	19.0	19.0	- 협동조합일반법과 신용조합, 은행 조합, 농업생산자단체, 주택조합, 사회적 조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기본사항을 규정. 협동조합은 법정 적립금을 관리하고 조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규정	없음	아니오	- 협동조합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 용고배당이 가능 하나 세제상 손금 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 하나 세제상의 특 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포르투갈	28.0	29.5	- 회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가변적인 자본을 가짐(cooperative code 1996) - 활동영역은 소비, 교역, 농업, 신용, 주거, 생산, 공예, 서비스, 문화, 교육, 공공부조 등 다양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 여부 는 협동조합 유 형에 따라 다름: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연간 이익 의 50%까지 가 능하지만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 배당금이 조합원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연간이익의 30%를 넘지 못하는 일반 적이 규정이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 배당이 불가하며 세 제상의 혜택은 없음	- 세제상의 혜택은 조합원과의 거래 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되 며, 일부 협동조 합의 경우 20% 만 면제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슬로바키아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Commercial code §221)에 의 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여타 특별법은 없음 - 최소 조합원 수를 5인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법적강제적립금 등 이 규정되어 있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가 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 하나 세제상의 특 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housing and social solidarity)배당이 불가능 -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슬로베니아	17.0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the Act on Cooperatives(Zakon o združgah)) 에 의해 최소 조합원 수 3명(법 인회원 포함)으로 설립가능하며 주로 농업분야에서 활동 - 조합원과의 거래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 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 조합 원이 허용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재무활동도 가능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배당 가능하지만 손금 산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손금산 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증상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스페인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부문을 제외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법은 없으며 14개 자치지역에 적용되는 협동조합법과 특정지역으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협동조합법(1999)에 근거하고 있음 - 조합원들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경제적 활동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음 	20.0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이용고에 따라 배분가능하나 세제상 특례는 없음 - 회계상 이익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규정되어있는 지급내역에 따라 연 6% 또는 법적이자율 한도로 지급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법인의 이익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 거래에 의한 이익과 2) 자본이득을 포함 조합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 의한 이익으로 구분 - 1)과 2)의 값이 음수이더라도 1)에는 20%를 적용하고, 2)에는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스웨덴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모든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연합회에 관한 법률(the law of economic associations)에 의해 규정됨 - 협동조합 또는 경제적 연합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둠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합원이 특정 과세연도에 조합법인 총회에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고배당, 할인 금액의 손금 산입 허용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된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되지는 않고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스위스	6.7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방법(Swiss Code of Obligations)에 의해 설립되지만 스위스 지방법에 따라 설립되기도 함 - 자본금이나 조합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과 주의 법인소득세 산정과 이점에서 모두 이용고배당 및 할인금액을 상업적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 이외에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터키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일반법(the Cooperative Act)에 의해 설립되며, 주요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자원에 두고있음 - 최소 7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만을 하고 적립금이나 여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고에 따라 배분 가능하고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만을 하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이 가능함 -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율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양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영국	20.0	20.0	- 조합법인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 또는 금액에 따르는 이용고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금으로 산입됨	- 조합법인 규정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세별상 특례는 없음	-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목적상 이익창출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원인에 지불한 월세(rent)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하며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따름
미국	32.9	38.9	-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및 판매 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	없음	아니오	- 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한하여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을 손금으로	- 이 외에 단위당 자본적립배당(per unit retain allocation)은 해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다만 이용고 배당 등 추가적 손금산입 항목으로 세제상의 혜택			조합법인의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이용고배당을 손금으로 인정 (IRC§1388(a)).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허용 (IRC§1382(c)(1))	당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법인이 판매한 상품량에 기초하여 그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환가능증서로 배당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 (IRC§1388(f)) - 미국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나, 농업 관련 조합에 한하여 해당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 (IRC§1382(c)(2)) -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IRC§1385)

자료: 김학수 외(2014)를 업데이트

IV. 조세지원의 타당성



IV. 조세지원의 타당성

1. 정책 목적과 대상설정의 타당성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은 공익사업 지원으로 정의 가능하나 실제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 분류되어 있어, 입법취지를 공익활동 지원으로 추론 가능하기 때문
 - 그러나 실제 조합법인은 영리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그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므로 공익활동 여부는 담보되지 않음
 - 개별 법률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법인의 특성상 조합원 상대의 영리 추구 금지, 과도한 사업확대 제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실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 금지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의 제5조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최대봉사 및 이익의 편중 금지 조항에 함께 규정
 - 김학수 외(2014)는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들의 공익성을 취약계층 지원, 공익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나 부정적으로 결론
 - 김완석·심태섭(2012)은 공익성보다는 영세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로 동 제도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 조세지원의 목적을 선행연구결과와 개별법 및 세법규정을 따라 공익사업 지원과 영세 협동조합법인(또는 조합원)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공익사업 지원 목적은 조합법인의 운영 등에 있어 공익활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강제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 조합법인의 활동이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영세 협동조합법인 지원 목적은 조세지원 대상이 영세하여 정상적인 납세순응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지 또는 지원대상 조합법인의 구성원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가. 공익사업 지원의 유무

1) 제도적 장치

- 공익사업 지원목적의 달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사전적 수단으로 조합법인의 운영 등의 과정에서 공익활동을 강제하고 있는지 분석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공익활동을 강제하고 있는지 판단 가능

-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들의 설립목적은 각 개별법에 따르면 대부분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규정하면서 부가적으로 지역사회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
 - 새마을금고 역시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기회균등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산림조합은 산림생산력 증진과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엽연초조합은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

- 소비자생활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 특히 농협, 수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등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도 목적으로 제시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산업간·지역간 또는 구성원 간 균형발전으로 볼 수 있는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간 균형있는 발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
 - 산업간·지역간 균형이라는 측면은 모든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 산업발전이 협동조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주목적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으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 어려움
-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를 반영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으로 구성
 - 가장 포괄적인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포괄분야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분쟁조정, 시험 및 검사, 자금 조달, 수출입, 복리후생 등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역시 소비행위와 관련된 물자의 구입, 생산, 가공 공급, 서비스제공, 보건 및 의료사업 등 전 영역을 사업내용으로 포함
 - 이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공익활동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역시 공익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공익적 성격사업의 투자한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오히려 공익적 성격사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새마을금고법」 제29조(사업의 종류 등) 제②항: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1항 제2호: 문화·복지·후생사업, 제3호: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제4호: 지역사회 개발사업

<표 IV-1>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사업내용

구분	설립취지	기능(사업내용)
신용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부대사업
새마을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사업, <u>문화·복지·후생사업</u>, <u>회원 교육사업</u>, <u>지역사회 개발사업</u>, <u>회원공제사업</u>, 중앙회 위탁사업, 국가나 공공단체 위탁사업, 그 외 주무부장관 승인사업 - 밀출친 사업 투자한도는(출자금+적립금)의 50%
농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 위탁사업, 관련 부대사업
수산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국가, 중앙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경제, 사회, 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다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대리, 대외무역, 차관사업, 관련 부대사업, 중앙회 회장 승인 사업

구분	설립취지	기능(사업내용)
중소기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복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시설 조성·관리 및 운영,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 및 사업분야 침해에 대한 조정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 수탁 기업체의 거래 알선과 조정,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시험 연구. - 사업 자금 대부, 알선, 차입, 사업에 대한 지도, 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단체적 계약 체결, 수출과 수입, 복리후생, 국가, 지자체 등 위탁사업,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리, 주무관청 승인사업, 하도급거래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금협의 및 조정 지원, 공제사업, 관련 부대사업
산림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신용사업, 자금 조성, 관리, 운용,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위탁사업, 다른 법령의 규정 조합사업, 관련 부대사업, 산림청장 승인사업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동이익 및 복지후생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 위탁사업, 다른 법령 규정 조합사업, 관련 부대사업,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사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의 구입, 생산, 가공공급, 서비스 제공,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보건, 의료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연합회 위탁 사업, 관련 부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사후적으로 조세지원을 받는 조합법인 등이 공익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의미가 없음
 - 사후적으로 조세지원을 받은 조합법인들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 많은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조세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

2) 실질적 활동

-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적 유도장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²⁾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점검
 - 공익성에 대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 가능
 - 동법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규정
 - 즉 공익성을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
 - 세법에서는 공익성 규정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세제혜택 대상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기존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업에 더하여 종교, 자선, 학술관련 사업으로 범위 설정
 - 현재 과세특례 대상 조합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을 요구하는 지정기부금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만족하지 못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포함되지 않음

2) 제3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14. 11. 25)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의 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기업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 10. 삭제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7.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0. ~ 29. 삭제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신하는 역할³⁾로 규정되기도 하나 보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조정할 필요

○ 이러한 역할은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국한된 상황이며 이것도 회원의 특정성(이하 나. 취약계층 지원 유무에서 논의)에서 문제점 존재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축수협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포함

○ 만약 농축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해당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합과의 거래량 또는 금액에 비례한 배당(즉 이용고배당)에 대한 지원이 보다 직접적이며 효과적

- 조합원과 조합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지원 대상 또는 이익 창출 주체, 즉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

□ 농협의 지출구조(2016)를 살펴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활동에 가까운 사회공헌활동과 복지사업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 사회공헌활동이 7,699억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도 1,389억원으로 1.7% 수준

3) 제3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14. 11. 25), “농·수·축협이 역할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조합이 하는 경우도 많이 ... 중략... 결국은싼 가격에 농산물을 조합에서 인수를 하고 그것을 손해 보면서 팔게 되면 그걸을 다른 방법으로 뭔가 메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 사회공헌활동은 장학사업, 소외계층 생활지원, 지역문화행사 등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금은 88억원으로 미미
- 배당실적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3,668억원으로 납입출자금 배당 3,042억원을 초과하는 규모
- 조합원과의 농산물 거래보다는 금융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납입출자금 배당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표 IV-2> 농협조합의 지출구조(2016)

(단위: 억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비율
사회공헌활동	· 장학사업 · 소외계층 생활지원 · 지역문화행사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	7,611	9.27
	· 기부금	88	0.11
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어린이 · 노인복지시설 등) · 문화후생사업(헬스장, 문화센터 등) · 지역사회개발사업(공동구 · 판매 등)	1,389	1.69
교육	· 조합원 교육	376	0.46
배당	·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	3,042	3.71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3,668	4.47
제세 공과금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1,987	2.42
	· 분담금(신용정보분담금, 햇살론출연료 등)	74	0.09
	· 예금자보호대상예금 출연금	1,375	1.67
고유사업	· 예적금 이자비용	56,322	68.60
	· 공제사업	1,293	1.57
	· 대출관련 부대비용	4,875	5.94
총 지출 계		82,100	100.00

주: 전국 1,131개 조합 기준
자료: 농협중앙회(2017. 6)

□ 수협조합의 2016년 지출구조 역시 공익적 성격 지출은 크지 않은 수준

- 넓은 의미로 모든 사회공헌활동, 복지사업, 교육 분야 지출은 총 303.2억원으로 전체 지출 4,915.7억원의 6.2% 수준
 - 그러나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 사업 역시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초중등교육)이 아닌 조합원 중심 교육사업
- 사회공헌활동 중 수산물 홍보 및 어촌관광사업(106억원), 연안어장 정화사업(3억원),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 사업(0.5억원), 장학금지급 등은 공익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음
- 배당 결정도 납입금 배당, 즉 주주에 대한 배당이 116억원으로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배당 106억원보다 많음

<표 IV-3> 수협조합의 지출구조(2016)

(단위: 백만원, %)

목적	해당 사업이름	금액	비율
사회공헌 활동	· 수산물 홍보 및 어촌관광사업	10,597	2.16
	· 연안어장 정화사업	346	0.07
	· 조합원 의료비 지원사업	283	0.06
	· 도시-어촌 교류활성화 촉진사업	55	0.01
	· 대어업인 지원·홍보사업(수산장학금지원 등)	3,377	0.69
복지사업	· 어촌소득증대사업	3,958	0.81
	· 어장관리지도사업	775	0.16
	· 어촌계·부녀회 등 육성사업	6,908	1.41
	· 어업인피해보상사업 등	1,743	0.35
교육	· 조합원, 어업인 및 조합임직원 교육	2,276	0.46
배당	·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	11,551	2.35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10,602	2.16
제세 공과금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17,513	3.56
	· 분담금(신용정보분담금, 햇살론출연료 등)	6,658	1.35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45,935	9.34
고유사업	· 예적금 이자비용	356,312	72.48
	· 공제사업	11,501	2.34
	· 대출관련 부대비용	1,180	0.24
총 지출 계		491,570	100.00

주: 전국 91개 수협조합 기준
 자료: 수협중앙회 기획부(2017. 6)

- 산림조합 역시 공익적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에의 지출비중은 작은 수준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은 42억원으로 전체 지출 7,381억원의 0.6%에 불과하며 조합원 교육비용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56억원 0.8% 수준
 - 배당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59억원으로 사업실적 배당 18억원의 3배 이상 수준

<표 IV-4> 산림조합의 지출구조(2016)

(단위: 백만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비율
사회공헌 활동	· 장학사업	550	0.07
	· 묘목지원	474	0.06
	· 산림지(임업신문 등) 무료 배부	1,014	0.14
	· 땀감 나누어주기 등 기타	1,440	0.20
	· 기부금	725	0.10
교육	· 조합원 교육	312	0.04
	· 선진지 견학	1,054	0.14
배당	·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	5,875	0.80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1,812	0.25
제세 공과금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4,027	0.55
	· 분담금(신용정보분담금, 햇살론출연료 등)	5,328	0.72
	· 예금자보호대상예금 출연금	8,232	1.12
고유사업	· 산림사업 등 영업비용	616,285	83.50
	· 예적금 이자비용	83,926	11.37
	· 대출관련 부대비용 등	7,008	0.95
총 지출 계		738,062	100

주: 전국 142개 산림조합 기준
 자료: 산림조합 중앙회(2017. 6)

- 신용협동조합의 공익활동은 유사하게 사회공헌활동, 복지사업,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유형의 조합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
 - 2016년 기준 3,119억원으로 전체 지출액 2.1조원의 14.7%이며 사회공헌활동 및 복지사업의 내용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공익활동
 - 조합원이 특정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사업은 거의 없음

<표 IV-5> 신용협동조합의 지출구조(2016)

(단위: 백만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비율
사회공헌 활동	· 장학사업 · 소외계층 생활지원 · 지역문화행사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	9,598	0.45
	· 기부금	2,772	0.13
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어린이·노인복지시설 등) · 문화후생사업(헬스장, 문화센터 등) · 지역사회개발사업(공동구·판매 등)	295,643	13.91
교육	· 조합원 교육	3,918	0.18
배당	·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83,135	3.91
제세 공과금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 분담금(신용정보분담금, 햇살론출연료 등) · 예금자보호대상예금 출연금	198,183	9.32
고유사업	· 예적금 이자비용	1,183,251	55.67
	· 공제사업	25,080	1.18
	· 대출관련 부대비용	323,944	15.24
총 지출 계		2,125,524	100

주: 전국 904개 신용협동조합 기준
 자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2017. 6)

□ 새마을금고의 사업구조(2016)는 다른 금융관련 조합법인과 달리 복지 및 교육사업의 비중이 낮은 상황

- 복지 및 교육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0.95%(383억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배당은 전체 지출의 4.4%로 1,766억원 규모

<표 IV-6> 새마을금고 사업구조(2016)

(단위: 백만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비율
복지사업 등	· 장학사업 · 소외계층 생활지원 · 지역문화행사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	25,486	0.63
	· 기부금	438	0.01
교육	· 회원 및 임직원 교육	12,424	0.31
배당	· 납입출자금에 따른 배당 ·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176,617	4.40
제세 공과금	· 지역신보출연금 등	17,279	0.43
	· 예금자보호준비금 등 각종 분담금	181,166	4.51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103,391	2.58
고유사업	· 금융사업 이자비용	2,108,102	52.52
	· 금융사업 기타비용	1,388,988	34.60
총 지출 계		4,013,890	100.0

주: 전국 1,321개 새마을금고 기준
자료: 새마을금고 중앙회(2017. 6)

- 한살림 생협4)중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서울생협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복지사업, 교육사업의 비중은 43.9%(2016)로 상당한 규모
 - 사회공헌활동이 2.4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사업도 1.4억원으로 7.4% 지출비중을 차지
 - 전반적으로 영세 조합법인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회공헌활동의 여지는 제한적임
 - 성남용인생협도 사업구조상 지출비중은 높지만 절대금액 측면에서 공익활동의 규모는 크지 않음

<표 IV-7> 한살림 서울생협 사업구조(2016)

(단위: 만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비율
사회공헌 활동	· 마을모임, 소모임, 요리교실, 자주지역활동, 지역강좌, 지역연대활동	3,794	19.4
	· 기부금(생산안정기금, 기타)	20,537	10.5
복지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돌봄사업(아이, 어르신) · 지역살림조사	14,475	7.4
교육	· 조합원 교육	12,920	6.6
배당	· 2016년 해당사항 없음	0	0.0
제세 공과금	· 제세금(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가세매입세액불 공분, 취득등록세, 사업소세, 장애인고용분담금 등)	58,958	30.1
고유사업	· 홍보비	51,176	26.1
총 지출 계		161,860	100.0

자료: 한살림 서울생협(2017. 6)

4) 전국단위의 집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서울 및 수도권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한다고 함.

<표 IV-8> 한살림 성남용인생협 사업구조(2016)

(단위: 만원, %)

목적	해당사업이름	금액 (만원)	비율 (%)
사회공헌 활동	· 일공동체 교육사업	148	0.3
	· 도농교류사업(조합원 생산지 방문 추진 등)	1,687	3.4
	· 조합원 자율 동아리활동 등 모임 지원	2,848	5.7
	· 성남 관내 고등학교 등 학생 식생활교육 · 식생활강사 양성 교육	4,100	8.2
	· 기부금(생산자 피해복구 비용 기부)	4,621	9.2
	· 출자(지역 사회단체, 협동조합에 자본금 출자)	3,100	6.2
복지사업		0	-
교육	· 조합원 교육, 강좌	300	0.6
배당		0	-
제세 공과금	· 법인세	354	0.7
	· 부가세	23,366	44.5
	· 기타	10,735	21.4
고유사업	· 예적금 이자비용	0	-
	· 공제사업	0	-
	· 대출관련 부대비용	0	-
총 지출 계		50,261	100.0

자료: 한살림 성남용인생협(2017. 6)

- 전반적으로 조합법인들의 지출현황은 조합법인이 그 활동의 결과를 조합원과 나누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비중은 제한적임
 - 특히 조합원을 위한 지출 역시 직접적인 사업이용실적 배당이 납입출자금 배당에 비해 큰 경우가 제한적이라 간접적인 지원 형태를 유지
 - 간접적 사업지원을 위한 조합원 교육 등이 중요한 지출항목
 - 그 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한살림 생협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과의 상품 거래를 통해 편익을 제공하는 형태

- 실질적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합법인의 지출내역은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지 못함

나. 취약계층 지원 유무

- 공익적 활동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할 때,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판단이 조세지원 여부 판단의 근거
 - 즉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주로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 이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을 규정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요건이 중요

- 지원대상 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을 살펴보면, 자격요건이 매우 느슨하여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주로 출자금 납입여부나, 지역 거주여부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한요건으로 보기 어려움
 - 자본이 있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자기 거주지역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
 - 농협, 수협 등 특정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합법인의 경우, 그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가입시점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가입 후 동 산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
 - 동시에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사실상 지역 거주민에게 조합원 자격 허용
 - 또한 특정 산업종사자라고 해서 모두 취약계층이라고 하기 어렵고, 개인이 아닌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기 어려움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규정을 분석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지 않음
 - 경제발전에 따라 약화되고 있는 농업, 수산업 등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최종 조세부담 귀착자인 개인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익성은 제한적
 - 특정 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조합법인만을 구별하여 지원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취약계층과의 연관성이 낮은 산업부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모든 개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표 IV-9>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구분	조합원의 자격
신용협동조합	-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
새마을금고	-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
농업협동조합	-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	-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 -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 - 준조합원은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지구별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소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 - 같은 업종의 사업영위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
산림조합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 준조합원은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수단의 적절성 판단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법인세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측면
 - 구체적으로 조합법인 등의 공익적 활동 유도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법인세 특례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느냐의 문제

- 먼저 조합법인의 (공익적)활동 유도라는 목적을 상정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절성을 검토 가능
 - 현재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공익활동과의 연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조합법인의 특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도는 목적 부합성 측면에서 연계성이 약한 제도
 - 조합법인의 모든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폭 넓게 정의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즉 조합원의 경우, 법인단계의 이윤까지 획득할 수 있는 조합법인과 거래가 일반 법인과 거래보다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조합법인과 거래를 선택할 유인이 큼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존의 유리한 요인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조합법인 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영전문성 등 조합법인의 운영 효율성이 일반 법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다면 기대되는 법인단계의 이윤이 작을 수 있으며 법인세 과세특례는 이러한 기대 이윤의 증가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결국 기대하는 법인단계의 이윤수준이 경영효율성 저하로 인한 비용보다 큰지 여부가 전반적인 조합법인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게 됨
 - 한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수익성 높은 조합법인의 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조합법인의 수익성 향상유인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 조합법인 활동의 공익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음
 - 조합법인 활동의 증가 여부는 실증분석의 영역

-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세 과세특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투입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자본유입을 활성화하는 효과
 -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한 자본유입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합법인으로 집중될 것이고 이는 조합법인의 순이익 추구 유인을 높이거나 수익성 높은 조합법인의 활동비중을 높일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출자자 배당이 주된 배당이 되어야 가능하며, 이용고 배당이 주된 배당이라면 이윤추구 동기는 크게 약화되므로 각 조합법인의 배당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유인 제공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배당 관련 규정은 생산자단체로서의 사업영역이 뚜렷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최우선 순위 배당대상으로 규정
 - 사업영역이 매우 다양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전체 배당의 50% 이상으로 규정
 - 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이용실적 배당을 강제하지 않거나 배당의 한 유형으로 제시
 - 신용협동조합은 납입출자금 배당만 규정하고 있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우 법률안에 배당에 대한 규정 없음
- 각 조합법인에 대해 자본투입량에 따른 실적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특례제도는 조합법인 활동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조세지원은 조합법인 지원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을 갖고 있으나 수익성이 큰 조합법인을 더 많이 지원하는 한계도 존재

〈표 IV-10〉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여부

배당 유형	조합법인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순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허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미허용	신용협동조합
배당관련 미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표 IV-11>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이익금 처분 규정

구분	이익금의 처분
신용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 처분 불가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 이 경우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 병행 가능
새마을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으며, 배당은 납입출자좌수에 비례.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 병행 가능
농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 못함 - 잉여금 배당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한도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수산업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별 수협은 손실 보전,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공제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불가 - 잉여금 배당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한도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 불가 - 잉여금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
산림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 배당 불가 - 잉여금 배당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한도 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엽연초생산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규정 없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 배당 가능 - 잉여금 배당은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50% 이상, 납입출자금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실시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배당불가

- 조합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조세지원의 적절성은 조합활동 이익이 구성원에게 잘 연계될 수 있느냐가 중요
 - 대부분의 조합법인들은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 배당을 허용하고 있어 조합활동의 이익이 구성원의 이익으로 연계되는 구조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지원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일반법인과 같은 자본에 따른 배당이 주류를 이룬다면 조합법인을 지원할 정책적 목적이 소멸되므로 이용고 배당 등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임

-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은 재정지원보다 우수
 - 재정지원은 전반적인 조합법인의 비용을 낮추어 조합법인 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조합의 규모증대 유인은 제한적
 - 재정지원제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의 규모에 반비례하는 등 성장에 따라 축소되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조합법인의 성장을 촉진하지는 않음
 -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조합법인의 유지에는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거나, 동태적인 경영개선 효과는 제한적
 - 조세지원은 세후소득률을 증가시키므로 조합법인의 규모증대 유인을 높임
 - 이익이 작은 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는 지원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 대형화에 기여할 수 있음

3. 지원수준의 적절성

- 지원수준의 적절성은 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가능
 - 조합법인의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결국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수준은 외국과 비교해서 적절성 평가 가능
 - 우리나라는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법인과 다른 과세방법,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활동을 지원

- 과세표준으로 조정된 순이익을 이용하고 세율도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반면 주요 외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방법 및 세율체계하에서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등을 통해 조합법인 단계에서 세부담 완화
- 조합법인 단계에서 조세지원 수준은 외국 조합법인의 이용고배당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즉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 시 정상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의 차이, 저율과세에 따른 정상세율과의 차이 등이 야기하는 지원규모와
 - 외국 조합법인의 이용고배당 손금산입효과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
- 다만 조세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복잡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 외국은 이용고배당의 손금산입을 통해 조합원과 조합 간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반면
 - 우리나라는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이 상이한 과세표준 산정, 상이한 세율적용 등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
 - 또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조합원 혜택으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있음
 - 만약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이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라면 현 제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깃팅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 우리나라는 동시에 조합원의 소득세 단계에서도 혜택을 부여
- 법인세과세특례 대상 조합의 일부분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중(「조특법」 제88조의5)
 - 2018년말까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의 출자금(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소득(이용고배당 포함)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또한 「조특법」 제88조의5가 적용되는 조합에 대한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2018년 말까지 소득세 비과세(「조특법」 제89조의3)

- 이러한 조세지원 규모는 다른 유형의 법인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단계에서도 소득세를 면세하고 있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큼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배당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정상과세
 - 공익활동의 유도 측면에서 더 제약적인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법인 유형에 비해 법인단계 과세는 더욱 약한 상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에 따라 지원수준 조정 가능
 - 조합원에 대한 지원목적이라면 조합원 단계로의 소득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수준에 대한 검토 필요
 - 법인단계에서는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등 목적에 가장 부합
 - 조합원에 대한 지원수준의 결정은 소득세 과세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에 더해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에 기반할 필요
 - 우리나라는 조합원의 소득세 과세단계에서도 배당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어 조합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활동 등을 다른 조세지원 법인들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의 적절성 평가 가능
 - 현재 대표적인 세제지원 대상 법인들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연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
 - 비영리법인 등은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님
 - 반면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법인이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 배당 비과세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만 기부자 또는 출연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수익사업에 저율과세와 세무조정 부담까지 완화하면서 소득자의 세부담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원 수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과한 편임

- 실제 조합법인 등의 활동이 거래당사자에게 미치는 공익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 및 개인단계의 세제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IV-12〉 세제지원 대상 법인별 사업대상과 조세지원제도

구분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자금조달	조합원 출자금	기부, 증여(상속)	기부, 출연(증여,상속)
지원대상	조합원(이용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지원제도	출자금배당 비과세 법인세 저율과세	기부자 세제혜택 고유목적사업용 이익 법인세 비과세	출연자 세제혜택 기부자 세제혜택

출처: 저자 작성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 조세특례를 대상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 재정사업은 4건 정도로 파악
 - 행정자치부의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농림부의 농협사업구조 개편 지원사업, 해수부의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등
 - 예산규모는 2017년 843억원 규모로 2016년 1,849억원에 비해 크게 축소
-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검토결과,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부족비용 지원으로 조세지원과는 차별화
 - 행정자치부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도 관련 사업이며 해수부 역시 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가까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중앙회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도 적자 지역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일 경우, 수익을 누리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인 조세지원과 차별화

- 농림부의 농협사업구조개선지원은 사업구조개편 시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지원 및 농협 경제사업 평가를 위한 용역 실시 비용 등으로 구성

- 지역조합 지원 또는 조합원 지원과의 연관성 약함

□ 조합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

<표 IV-13>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단위: 백만원)

세부 재정사업명	예산규모		중복성 평가
	2016	2017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	63	100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및 해외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님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169,520	58,345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시 부족자본금 충당 금융채권의 이자비용 지원으로 농협활동 또는 조합원 지원 목적과의 연관성 높지 않음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6,954	14,915	조합의 감사지원, 통계조사,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등의 보조사업(20~100%)으로 전반적인 수산업 지원성격이 크며, 개별조합 지원과의 중복은 감사지원 정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8,357	10,936	중소기업 중앙회 운영비 보조가 대부분(2016년 100%)이며 협동조합 활성화의 경우 중복의 여지가 있으나 비용 부족분 지원일 경우 조세지원과 차별화됨
합계	184,894	84,296	

자료: 농림부, 해수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1. 조합법인 규모와 성장에 미친 효과 검증

가. 기초적인 분석

□ 조합법인 조세지원의 (법인) 성장 관련 효과성 분석

-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원래적 목적은 특례지원을 받는 조합법인들의 공익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익성에 대한 범주적 정의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의 문제가 발생함
 - 김학수 외(2014)에서는 조합법인들의 과세특례와 공익성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공익성의 개념의 포괄성, 공익성 평가방법의 한계 등으로 조합법인들의 공익성 증진 여부가 직접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하였음
 - 또한 동 보고서의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듯이 과세특례를 지원받는 조합법인들의 경우 공익성 추구라는 본래적 조합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성 분석은 공익성 추구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조합법인들의 공익성 활동이 전제된 상태에서 조세지원의 효과성은 조세특례로 인한 조합법인들의 세부담 감소와 성장 촉진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
 - 조세지원의 목적이 공익활동의 증가라고 한다면 공익활동의 증가는 조합법인으로의 자본투입 증가(숫자 증가) 또는 조합법인의 성장(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두 가지 측면의 조합법인 성장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먼저 조합법인 투자자본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조합법인으로의 자본이동을 유발하는데 그 중 조합법인 숫자의 증가를 분석
- 두 번째는 실질적인 조합법인의 성장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의 변화에 미치는 조세지원의 영향을 분석

- 자료의 성격(패널 여부)에 따라 조합법인의 성장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을 패널 분석 또는 추세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음
- 하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는 비교대상 법인의 자료뿐만 아니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조합법인들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음

□ 조합법인 조세지원이 법인의 규모에 미친 영향 분석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1년 4,441개에서 2015년 역시 동일한 숫자로 기간 중 특별하게 변동하지는 않았음

<표 V-1>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조합수(개)					
전체	4,441	4,385	4,484	4,454	4,441
주요 조합법인	2,796	2,855	2,926	2,895	2,803
농협	903	875	777	734	688
수협	63	56	21	6	6
신협	946	914	911	892	885
새마을금고	828	938	1,088	1,169	1,137
산림조합	56	48	70	52	52
소비자생활협	-	24	59	42	35
기타조합	1,645	1,530	1,558	1,559	1,638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63	65	65	65	63
농협	20	20	17	16	15
수협	1	1	0	0	0
신협	21	21	20	20	20
새마을금고	19	21	24	26	26
산림조합	1	1	2	1	1
소비자생활협	-	1	1	1	1
기타조합	37	35	35	35	37
증감률(%)					
전체	-	-1.3	2.3	-0.7	-0.3
주요 조합법인	-	2.1	2.5	-1.1	-3.2
농협	-	-3.1	-11.2	-5.5	-6.3
수협	-	-11.1	-62.5	-71.4	0.0
신협	-	-3.4	-0.3	-2.1	-0.8
새마을금고	-	13.3	16.0	7.4	-2.7
산림조합	-	-14.3	45.8	-25.7	0.0
소비자생활협	-	-	145.8	-28.8	-16.7
기타조합	-	-7.0	1.8	0.1	5.1

- 하지만 농협은 2011년 903개에서 2015년 688개로 지속적으로 그 수가 감소해 오고 있음
- 수협은 2011년 63개에서 2015년 6개로 크게 감소하였음
- 신협은 2011년 946개에서 2015년 885개로 약간 감소하였음
- 새마을금고는 2011년 과세특례 신고 법인신고 수가 828개에서 2015년 1,137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소비자생협은 2012년 24개에서 2015년 35개로 늘어 났음
- 과세특례 신청을 한 기타조합법인은 전체에서 35~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가 있으며 2011년 1,645개에서 2015년에도 1,638개로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음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2013년(세무조정 대상 확대 조치) 및 2014년(당기순이익 20억원분 초과분 세율인상, 9%에서 12%로) 이후 농협은 지속적으로 과세특례 법인 수가 감소해 오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이와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조합법인 조세지원이 법인의 매출액에 미친 영향 분석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의 전체 매출액 합계는 2011년 54조원에서 2015년 5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7.8%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 매출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은 농협으로 2011년 59%에서 2016년 42%로 5년 사이에 17%p 감소하였음
 - 농협의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 대비 16%나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도 9.0% 감소하였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 매출액에서 농협 다음으로 높은 비중(2015년 43%)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조합법인은 매출액 증가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3년과 2014년 제도 변화는 농협을 포함한 주요 조합법인의 매출액은 감소, 기타조합법인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표 V-2> 조합법인별 매출액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준(억원)					
전체	539,070	581,236	576,006	574,919	562,886
주요 조합법인	402,406	408,889	349,977	330,114	318,396
농협	319,161	316,466	265,711	241,878	234,068
수협	17,252	18,061	7,518	1,231	2,600
신협	35,949	36,847	32,836	32,589	32,628
새마을	26,722	33,765	35,227	46,950	43,855
산림	3,322	3,212	4,871	3,513	3,450
생협	-	536	3,815	3,953	1,795
기타조합	136,664	172,348	226,030	244,805	244,489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75	70	61	57	57
농협	59	54	46	42	42
수협	3	3	1	0	0
신협	7	6	6	6	6
새마을	5	6	6	8	8
산림	1	1	1	1	1
생협	-	0	1	1	0
기타조합	25	30	39	43	43
증감률(%)					
전체	-	7.8	-0.9	-0.2	-2.1
주요 조합법인	-	1.6	-14.4	-5.7	-3.5
농협	-	-0.8	-16.0	-9.0	-3.2
수협	-	4.7	-58.4	-83.6	111.2
신협	-	2.5	-10.9	-0.8	0.1
새마을	-	26.4	4.3	33.3	-6.6
산림	-	-3.3	51.6	-27.9	-1.8
생협	-	-	611.2	3.6	-54.6
기타조합	-	26.1	31.1	8.3	-0.1

□ 조합법인 조세지원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분석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의 전체 당기순이익 합계는 2011년 3조원에서 2015년 2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15.9% 크게 감소한 이후 201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임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 중 당기순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조합은 농협이지만 그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2011년 43%에서 2016년 35%로 5년 사이에 8%p 감소하였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증가율의 변동 또한 큰 것으로 보여짐

-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 당기순이익에서 농협 다음으로 높은 비중(2015년 34%)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조합법인은 매출액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3년과 2014년 제도 변화는 농협을 포함한 주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기타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표 V-3> 조합법인별 당기순이익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준(억원)					
전체	30,823	25,914	26,115	28,147	28,709
주요 조합법인	22,683	18,606	17,749	19,009	18,857
농협	13,356	11,746	9,675	9,289	9,991
수협	982	546	236	33	133
신협	3,622	2,651	2,608	2,839	3,171
새마을	4,584	3,515	4,992	6,616	5,354
산림	139	137	163	185	189
생협	-	10	75	48	20
기타조합	8,140	7,308	8,366	9,137	9,852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74	72	68	68	66
농협	43	45	37	33	35
수협	3	2	1	0	0
신협	12	10	10	10	11
새마을	15	14	19	24	19
산림	0	1	1	1	1
생협	-	0	0	0	0
기타조합	26	28	32	32	34
증감률(%)					
전체	-	-15.9	0.8	7.8	2.0
주요 조합법인	-	-18.0	-4.6	7.1	-0.8
농협	-	-12.1	-17.6	-4.0	7.6
수협	-	-44.4	-56.9	-86.0	303.9
신협	-	-26.8	-1.6	8.9	11.7
새마을	-	-23.3	42.0	32.5	-19.1
산림	-	-1.8	19.6	13.3	2.0
생협	-	-	650.5	-36.5	-59.1
기타조합	-	-10.2	14.5	9.2	7.8

<표 V-4> 분석에 활용된 비특례법인

	2011	2012	2013	2014	2015
조합수(개)					
전체	4,240	4,406	3,842	3,450	3,169
조합법인	51	79	122	96	89
농협	5	4	6	6	7
수협	1	2	1	1	-
신협	6	3	2	1	1
새마을	37	51	67	35	45
산림	2	4	3	2	2
생협	-	15	43	51	34
기타	4,189	4,327	3,720	3,354	3,080
매출액(억원)					
전체	108,068	306,933	234,980	192,547	156,199
조합법인	1,694	197,601	138,067	120,196	86,550
농협	799	193,698	134,356	116,339	82,516
수협	262	339	24	58	-
신협	1	0	0	1	22
새마을	545	1,135	1,254	864	1,117
산림	87	2,318	1,965	2,167	2,360
생협	-	112	468	767	536
기타	106,374	109,332	96,913	72,351	69,648
당기순이익(억원, 결손제외)					
전체	9,274	7,327	5,681	11,231	9,124
조합법인	14	9	127	5,013	1,389
농협	12	2	120	5,003	1,127
수협	-	-	1	-	-
신협	0	0	-	0	4
새마을	2	4	1	-	-
산림	-	-	-	-	257
생협	-	4	6	9	2
기타	9,261	7,318	5,554	6,218	7,735
부담세수액(백만원)					
전체	107,917	53,060	34,122	70,137	71,599
조합법인	23	86	51	34,061	24,236
농협	1	0	0	33,964	24,175
수협	0	0	6	0	-
신협	2	0	0	4	32
새마을	20	52	6	0	2
산림	0	0	0	0	0
생협	0	34	38	93	26
기타	107,894	52,974	34,072	36,075	47,363

주: 비특례법인중 조합법인은 조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과세되는 법인이며, 기타는 유사규모의 일반법인

나. 과세특례 적용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법인의 규모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엄밀하게 규명하고자 함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은 해당 조합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같은 조합 내에서도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으로 나누어짐
 - 그러므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효과성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법인(특례법인)과 과세특례 미적용법인(비교법인)의 성과지표가 과세특례 적용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즉,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평균사업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ATT)를 추정해야 함
 - 여기서 평균사업효과에의 이상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조합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treatment group, 특례법인)과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control group, 비특례법인)으로 임의선정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두 조합들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과세특례 적용의 효과가 될 것임
 - 하지만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임의 선정이 아니라 각 조합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와 조합구성원들의 의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평균사업효과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세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특성상 조합법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연도별 평균적인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함

- 평균사업효과에 대한 추정을 위한 간단한 모형설정
 - 조합 i 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의 성과지표를 Y_{1i} 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성과지표를 Y_{0i} 라고 하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D_i 라고 함
 - 우리가 중국적으로 관심가는 것은 조합 i 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성과지표 Y 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임
 - 즉,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되는 ATT를 추정하려고 하는 것임

$$\gamma \equiv E[Y_{1i} - Y_{0i} | D_i = 1] \quad \text{식 (1)}$$

○ 위의 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상황에서의 성과지표를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⁵⁾ 우리의 경우 과세특례 조합법인과 매출액과 업종에서 유사한 규모의 비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재무지표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ATT를 추정하고자 함

- 통상적인 경우 위의 식에 대한 추정을 위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P(X)$ 가 필요한데 성향점수는 어떤 조합이 그 조합의 특정한 성질을 조건부로 했을 때 과세특례 조합으로 선정될 가상의 확률임

$$P(x) \equiv \Pr[D=1|X] = E[DX] \quad \text{식 (2)}$$

단, 여기서 X 는 조합의 특징

- 특정한 이론적 가정을 통해 성향점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ATT를 추정할 수 있음

$$\gamma \equiv E[E[Y_{1i} | D_i = 1, p(X_i)] - E[Y_{0i} | D_i = 0, p(X_i)] | D_i = 1] \quad \text{식 (3)}$$

- 식 (1)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반사실적 상황에 대한 성과지표의 관측이 불가능하였지만, 식 (3)에서는 과세특례 법인은 아니지만 성향점수가 동일한 법인의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과세특례 조합의 반사실적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비교할 수 있는 것임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상 과세특례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성향점수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특징을 구분하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비교법인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과세특례 규모를 구하여 이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추정할 수밖에 없음⁶⁾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를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액)을 지표로 하여 비교법인의 가상적인 성과를 추정하여 이를 특례법인과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위의 식 (3)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에 따른 ATT를 추정하였음

5)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의 Y_{1i} 는 관측 가능하지만 이와 동시에 Y_{0i} 는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6) 여기서 과세특례 규모는 비교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금총액에서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의 세금총액을 차감한 규모임

□ 사용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

- <표 V-5>는 본 분석에 사용된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정리한 것임
- 본 분석은 2011년부터 5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특례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교법인들의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임
- 특히, 비교법인들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세정당국에서 제공한 당기간 동안의 실제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특례규모(=실제부담 세금총액-과세특례 적용시 세금총액)를 합산하여 추정된 것이며, 순이익률 역시 이러한 과세특례규모가 적용된 것으로 이를 통해 반사실적(counterfactual) 성과지표를 추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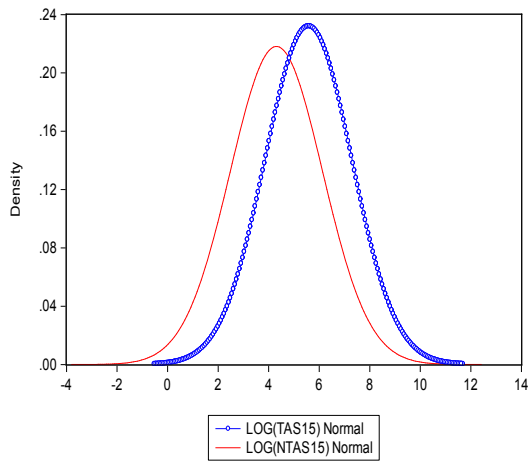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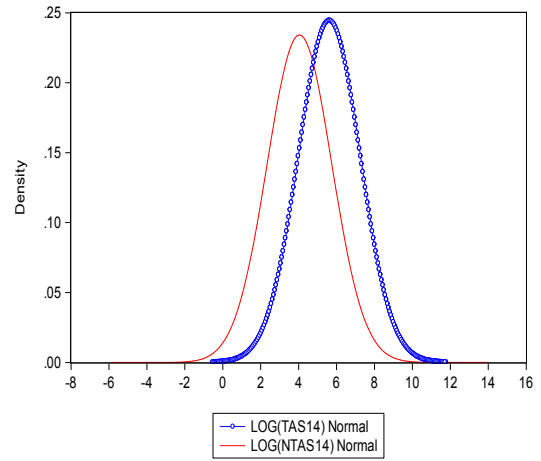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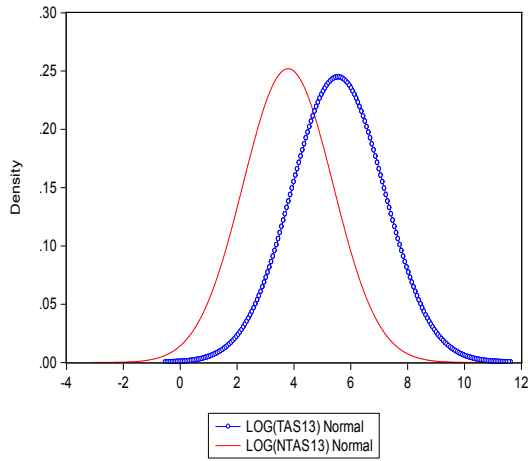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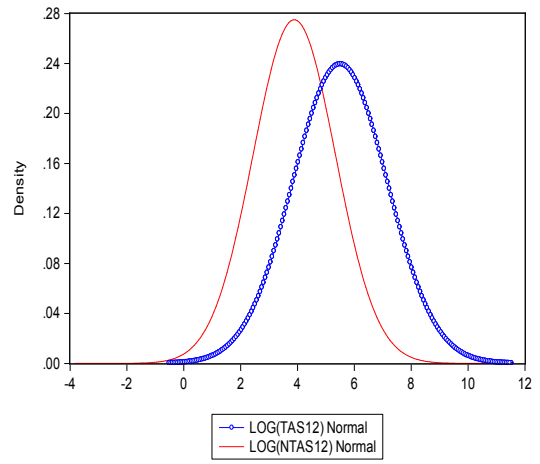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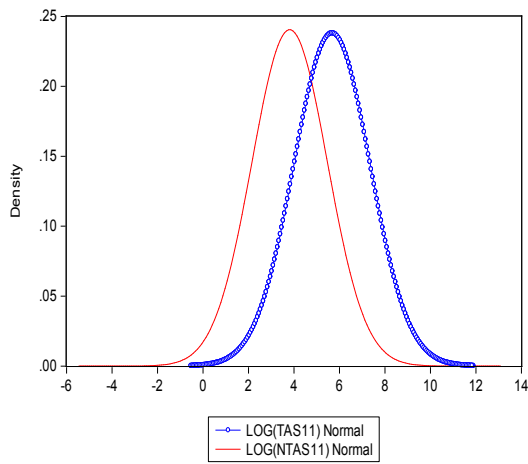
<표 V-5>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 비교

	연도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표준편차	관측치수
(A) 당기순이익(백만원)							
특례법인	2011	780	404	33,081	1	1,376	3,951
	2012	684	317	29,955	1	1,268	3,790
	2013	692	334	40,409	1	1,320	3,773
	2014	725	354	25,745	1	1,236	3,883
	2015	758	353	25,036	1	1,326	3,787
비교법인	2011	316	43	215,999	1	4,067	3,014
	2012	239	44	55,768	3	1,481	3,014
	2013	207	42	23,300	1	875	2,665
	2014	485	58	489,253	1	10,341	2,254
	2015	462	74	122,701	1	3,459	1,926
(B) 순이익률(%)							
특례법인	2011	9.78	6.17	99.95	0.01	11.80	3661
	2012	8.19	4.70	99.99	0.01	11.65	3531
	2013	8.78	5.08	99.99	0.01	11.86	3452
	2014	9.89	6.45	98.43	0.55	11.67	3661
	2015	9.71	6.28	98.14	0.24	11.73	3661
비교법인	2011	8.57	2.30	99.42	0.02	15.93	2958
	2012	7.29	2.22	96.51	0.57	14.99	2958
	2013	7.21	2.18	99.40	0.03	15.37	2641
	2014	11.13	2.73	98.90	0.01	19.54	2212
	2015	15.92	5.50	99.97	0.02	21.60	1890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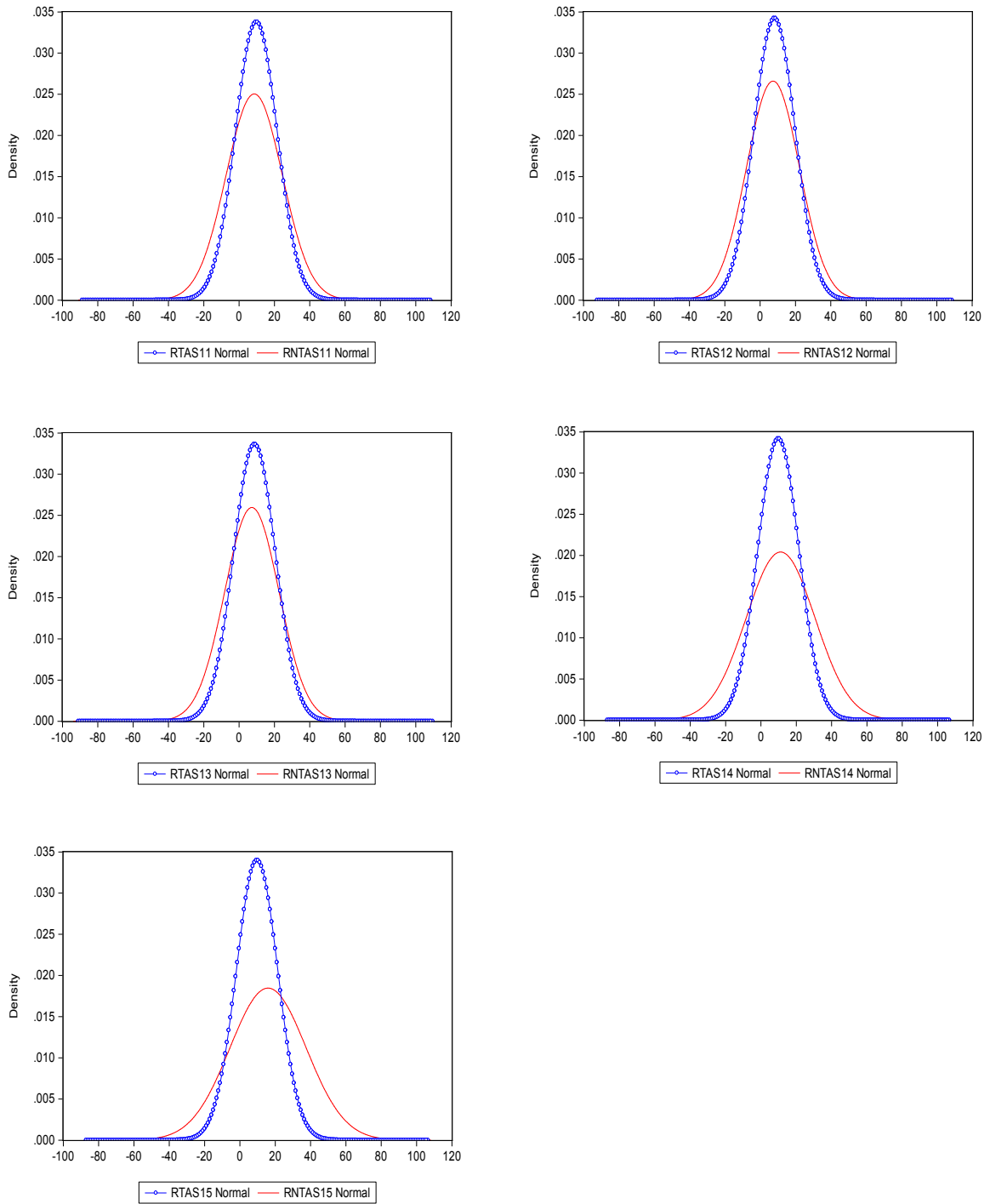
- [그림 V-1]과 [그림 V-2]는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연도별 당기순이익과 순이익률의 확률분포를 비교하고 있음
- 당기순이익의 경우 모든 비교시점에서 특례법인의 분포(평균)가 비교법인의 분포보다 우측에 있어 과세특례 조치가 특례법인의 성과지표에 더 우월하게 추정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순이익률의 경우는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경우 평균은 비슷하나 비교법인의 표준편차가 특례법인보다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특례 조치가 특례법인의 성과지표에 더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여기서 안정적이라 함은 과세특례 조치로 인해 특례법인들 사이에 순이익률의 편차가 그렇지 않은 조합들에 비해 더 좁혀진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동 분석은 단순한 확률분포상의 차이를 통한 시가적인 평가(eye-bowling test) 이므로 보다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필요로 함

[그림 V-1]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 분포 비교



- 주: 1. 횡축은 자연로그변환된 당기순이익이고, 종축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확률밀도함수 값(density)를 나타내는 것임.
 2. TAS11-15는 특례법인의 당기순이익이며, NTAS11-15는 비교법인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냄.

[그림 V-2]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순이익률 분포 비교



- 주: 1. 횡축은 자연로그변환된 당기순이익이고, 종축은 정규분포를 가정한 확률밀도함수 값(density)를 나타내는 것임.
 2. RTAS11-15는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며, RNTAS11-15는 비교법인의 순이익률을 나타냄.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특례로 인한 성과지표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가 <표 V-6>에 제시되어 있음

- 우선 당기순이익을 성과지표로 해서 분석했을 경우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014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3~4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특례법인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식 (3)에서의 γ 에 대한 추정치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순이익률을 성과지표로 해서 분석했을 경우 2011~13년까지는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2014~15년에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11~13년의 경우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1.0~1.6%p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4~15년의 경우에는 비교법인의 순이익률이 1.2~6.2%p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특히, 2014년부터 특례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특례법인의 순이익 창출메커니즘이 변화하여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당기순이익 자체는 근소하게나마 특례법인이 비교법인보다 더 높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수입금액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가 비교법인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V-6>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특례로 인한 성과지표 비교 분석

	2011	2012	2013	2014	2015
(A) 당기순이익의 평균의 차이					
당기순이익 차이	464.31***	445.06***	485.39***	240.34	295.54***
표준오차	77.24	33.94	27.38	218.73	81.72
t-값	6.01	13.12	17.73	1.10	3.62
(B) 순이익률의 평균의 차이					
순이익률 차이	1.21***	0.90***	1.57***	-1.23***	-6.20***
표준오차	0.35	0.34	0.36	0.46	0.53
t-값	3.45	2.65	4.35	-2.69	-11.63

주: ***, **, *는 1%, 5%, 그리고 10%의 통계적 유의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

-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변화는 10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순이익률 성장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고 100억원 초과 법인은 유사한 성장세를 보임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은 여전히 비교법인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절대적 수익성은 열악

<표 V-7>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추이와 비교법인과의 상대비율

(단위: %)

	수입금액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례법인	0~20억 이하	15.55	15.06	15.08	14.49	14.68
	20~100억 이하	10.22	7.35	8.82	10.34	9.84
	100억 초과	4.98	4.26	4.08	4.60	4.97
	계	9.77	8.11	8.68	9.49	9.45
비교법인	0~20억 이하	9.93	7.65	8.12	12.51	16.40
	20~100억 이하	5.91	5.64	5.25	7.82	12.51
	100억 초과	10.47	7.88	7.45	6.04	10.89
	계	8.39	6.81	6.90	10.55	14.99
특례법인/ 비교법인	0~20억 이하	157	197	186	116	89
	20~100억 이하	173	130	168	132	79
	100억 초과	48	54	55	76	46
	계	116	119	126	90	63

주: 기업별 당기순이익률의 평균 기준이며 결손법인은 제외. 당기순이익비율 100% 초과인 경우 제외
 자료: 국세청, 「조합법인 법인세 신고자료」

2.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효과 추정

□ 조합법인 조세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조합법인 조세지원 정책대상인 8개 조합법인들의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조합법인 조세특례로 인해 조합법인들의 지출활동(소비, 투자)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조세특례가 없었을 경우의 지출활동에 의한 파급효과의 차이가 조합법인 조세특례에 의한 순 경제적 파급효과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전체의 투입-산출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유용한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임
 - 투입-산출분석은 각 산업의 투입과 산출 관계를 통한 상호의존관계에 기초한 분석기법으로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관련된 다른 산업의 공급 변화를 의미하므로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효과분석을 할 경우 유리함
 - 따라서 조합법인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관련 산업들의 국민경제적 효과(II_1)로 파악하고 이것과 동일한 특례규모⁷⁾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등)에 의한 국민경제적 효과(II_2)를 각각 구한 후 이의 차이($II_1 - II_2$)를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순효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함

가.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투입-산출 분석⁸⁾

- 산업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고전적 가정에 따라 행과 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칭적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짐⁹⁾
 - 투입산출표를 행으로 보면 i 산업의 중간수요, 최종수요, 수입 및 총산출이 기록되는데 이는 i 부문의 산출구조를 보여줌([그림 V-3] 참고)
 - 본 연구는 조합법인의 개별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재들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을 관찰하게 되므로 국산거래표에 근거하여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 등을 추정하기로 함

7) 만약 특례가 없었다면 축소된 비과세 감면 규모만큼의 재정수입이 증가했다는 가정을 한 것임.
 8) 본 절의 내용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에 사용된 방법론(pp. 114~118)을 전용한 것임.
 9)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기초로 이루어짐. 여기서 고전적 가정은 다음 네 가지를 지칭함. 첫째,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 즉 각 상품과 각 산업부문은 1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고 가정함. 둘째,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각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한다고 가정. 셋째,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수준에 비례함. 넷째,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행한 생산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다는 가정임(한국은행, 2015).

[그림 V-3]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중 간 수 요					최 종 수 요	총수요	총 산출액 ¹⁾	수입	잔폐물 발생(+)	총공급
		1	2	...	j	...						
중 간 투 입	1	x_{11}	x_{12}	...	x_{1j}	...	x_{1n}	y_1	x_1	m_1	z_1	
	2	x_{21}	x_{22}	...	x_{2j}	...	x_{2n}	y_2	x_2	m_2	z_2	
	⋮	⋮	⋮		⋮		⋮	⋮	⋮	⋮	⋮	
	i	x_{i1}	x_{i2}	...	x_{ij}	...	x_{in}	y_i	x_i	m_i	z_i	
	⋮	⋮	⋮		⋮		⋮	⋮	⋮	⋮	⋮	
	n	x_{n1}	x_{n2}	...	x_{nj}	...	x_{nn}	y_n	x_n	m_n	z_n	
소 계												
순생산물세												
잔폐물발생(-)												
중간투입계												
부 가 가 치		v_1	v_2	...	v_j	...	v_n					
총 투입액		x_1	x_2	...	x_j	...	x_n					

주: 1) 자가공정 산출액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5).

□ 투입계수의 산출

- 투입계수는 각 품목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해당 상품의 총투입액(=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임
- 즉, 투입계수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품목부문의 생산기술구조, 즉 투입과 산출의 생산함수를 의미함
- 앞서 [그림 V-3]에서와 같은 투입산출표에서는 투입계수를 $a_{ij} = \frac{x_{ij}}{x_j}$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부가가치율은 $a_j^v = \frac{v_j}{x_j}$ 로 나타낼 수 있음

□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품목부문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계측하는 데 이용되는 매개변수임

- 즉, 투입계수를 매개로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생산의 크기를 생산유발효과라고 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생산유발계수임
- 품목부문 수가 많은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하여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 파급 효과를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역행렬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게 됨
- 앞서 [그림 V-3]에서 각 품목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수입과 잔폐물 발생액을 차감하면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다음과 같은 수급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begin{array}{cccccccc}
 a_{11}x_1 + a_{12}x_2 + \cdots + a_{1j}x_j + \cdots + a_{1n}x_n + y_1 - m_1 - z_1 & = & x_1 \\
 \vdots & & \vdots \\
 a_{i1}x_1 + a_{i2}x_2 + \cdots + a_{ij}x_j + \cdots + a_{in}x_n + y_i - m_i - z_i & = & x_i \\
 \vdots & & \vdots \\
 a_{n1}x_1 + a_{n2}x_2 + \cdots + a_{nj}x_j + \cdots + a_{nn}x_n + y_n - m_n - z_n & = & x_n
 \end{array}$$

단, a_{ij} : j 부문의 생산을 위한 i 부문 생산물 투입계수

x_{ij} : i 부문의 산출액(자가공정산출액 포함)

y_i : i 부문의 최종수요

m_i : i 부문의 수입

z_i : i 부문의 잔폐물 발생액

- 위의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j} & \cdots & a_{1n}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cdots & \vdots \\ a_{i1} & a_{i2} & \cdots & a_{ij} & \cdots & a_{in}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cdots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j}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vdots \\ x_j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vdots \\ y_i \\ \vdots \\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m_1 \\ \vdots \\ m_i \\ \vdots \\ m_n \end{bmatrix}
 - \begin{bmatrix} z_1 \\ \vdots \\ z_i \\ \vdots \\ z_n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vdots \\ x_i \\ \vdots \\ x_n \end{bmatrix}$$

$$\Rightarrow Ax + y - m - z = x$$

- 여기에서 A 는 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벡터, y 는 최종수요벡터, m 은 수입액벡터, z 는 잔폐물 발생액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x 에 대해 풀어 정리하면

- $x = (I - A)^{-1}(y - m - z)$ 과 같이 쓸 수 있는데, $(I - 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라고 함
-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라는 수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도출

- 산업연관표에서는 공급 능력이나 노동력 등은 충분하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최종수요의 변동이 국내 생산의 변동을 유발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변동이 부가가치 변동의 원천이라고 간주
- 따라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수요와 생산수준 간의 연관관계뿐 아니라 부가가치와의 기능적인 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
- 부가가치벡터를 v ,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을 \hat{A}^v 라고 하면, $v = \hat{A}^v x$ 가 성립하고 이를 생산유발관계식 $x = (I - A)^{-1}(y - m - z)$ 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v = \hat{A}^v (I - A^d)^{-1}(y^d - z)$ 의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에서 $\hat{A}^v (I - A^d)^{-1}$ 을 부가가치유발계수라고 함
- 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품목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를 나타냄

□ 노동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반영하는 것이 노동유발계수임
- 노동유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 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노동생산성과는 역수 관계에 있음¹⁰⁾

10) 노동계수는 노동량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되는데,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를 고용계수라 하고 노동량

- 노동계수가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생산을 위하여 설비자동화 등의 투자가 늘어나면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작아지므로 노동계수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산업, 곧 자본집약적 산업인 것을 나타냄
- 수식으로 표현하면 i 부분의 노동계수(취업계수)는 $l_i^{w*} = l_i^w / x_i$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l_i^w 는 취업자 수, x_i 는 산출액을 나타냄
- 노동유발계수는 각 부분의 노동계수를 주 대각요소로 하는 대각행렬을 \hat{L}^* 라 하고 이를 생산유발계수 $(I - A^d)^{-1}$ 에 곱한 $\hat{L}^*(I - A^d)^{-1}$ 을 노동유발계수라고 함
- 노동유발계수 행렬에서 i 열의 합계는 i 부분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i 부분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노동량을 의미함

나.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는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30개로 구성되며, 30개 분야에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이 중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산업은 조합법인의 종사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표 V-8>에는 이들 조합들의 업태비중이 정리되어 있음
- 이들 조합법인들의 업태별 분포 및 비중을 고려하여 각 조합법인이 종사하는 산업에 대한 각종 유발계수(생산, 부가가치, 취업)를 분석할 수 있음

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는 취업계수라고 함.

- 예를 들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태는 금융보험업으로 2011~15년 평균 75%의 비중으로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도소매업으로 20%, 그리고 농림어업은 5%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¹¹⁾
- 따라서 이들 업종들의 비중을 고려하여 조합법인분야의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을 추정하였음¹²⁾

<표 V-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업태별 분포

업태	2011	2012	2013	2014	2015
(A)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업태수(개)					
금융보험업	3,037	2,932	2,926	2,888	2,844
도소매업	778	802	806	820	825
농림어업	185	187	224	212	213
제조업	105	102	105	112	114
서비스업	287	284	287	285	287
그 외	73	113	119	130	123
계	4,465	4,420	4,467	4,447	4,406
(B)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업태 비중(%)					
금융보험업	68	66	66	65	65
도소매업	17	18	18	18	19
농림어업	4	4	5	5	5
제조업	2	2	2	3	3
서비스업	6	6	6	6	7
그 외	2	3	3	3	3
계	100	100	100	100	100

11) 이들 업종 이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타 업종들도 있으나 이들 업종들의 비중이 작고 세분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가중평균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았음

12) 조합법인 분야의(가중평균)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등은 금융보험업과 도소매업의 업태별 특징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특정 업태 또는 조합법인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편의(bias)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

-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과세특례 조합법인 종사산업에 대한 각종 유발계수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 <표 V-9>에 제시되어 있음
 - 우선,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종사산업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1.743으로 조합법인의 과세특례가 1원 증가할 때 전 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생산액 합계는 1.743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조세특례제도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생산의 측면에서는 두드러지게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33인데 이는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833단위임을 의미함
 - 취업유발계수는 14.5명(10억원당)인데 이는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에 대한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경우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의 직간접 유발인원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서 14.5명의 취업을 유발함을 나타냄

- 한편,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조세특례 규모는 정부의 법인세 증가로 귀속되고 이는 정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지출(소비지출, 투자지출 등)의 증가는 최종수요의 증가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각종 유발계수를 추정할 수 있음
 - 우선, 특례규모가 전액 정부소비지출로 사용될 경우 최종수요 중 정부소비 항목의 각종 유발효과는 <표 V-10>에 정리되어 있음
 - 정부소비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4956, 0.8641, 15.3472로 추계되었음
 - 다음으로 특례규모가 전액 정부투자지출로 사용될 경우 최종수요 중 정부투자지출 항목의 각종 유발효과는 <표 V-10>에 정리되어 있음
 - 정부투자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2.1467, 0.7178, 13.446로 추계되었음
 - 마지막으로 특례규모가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의 가중평균으로 사용될 때 경우의 각종 유발효과는 <표 V-11>에 정리되어 있음¹³⁾
 - 정부지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그리고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6381, 0.8321, 14.9312로 추계되었음

13) 201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정부소비:정부투자지출=0.78:0.22인데 이를 반영하여 각종 유발효과도 이 비중을 가중평균으로 하여 구한 것임.

<표 V-9>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분야	조합법인 분야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63	0.034	1.664
광산품	0.000	0.000	0.001
음식료품	0.027	0.004	0.080
섬유 및 가죽제품	0.012	0.003	0.053
목재 및 종이, 인쇄	0.022	0.006	0.106
석탄 및 석유제품	0.023	0.002	0.002
화학제품	0.030	0.006	0.040
비금속광물제품	0.002	0.000	0.004
1차 금속제품	0.010	0.001	0.008
금속제품	0.008	0.002	0.019
기계 및 장비	0.007	0.002	0.023
전기 및 전자기기	0.020	0.005	0.030
정밀기기	0.003	0.001	0.013
운송장비	0.008	0.002	0.016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08	0.003	0.05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2	0.007	0.024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08	0.004	0.034
건설	0.003	0.001	0.025
도소매서비스	0.234	0.120	3.201
운송서비스	0.045	0.016	0.50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5	0.013	0.603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88	0.038	0.490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877	0.449	4.848
부동산 및 임대	0.048	0.035	0.1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42	0.024	0.477
사업지원서비스	0.052	0.035	1.379
공공행정 및 국방	0.005	0.004	0.042
교육서비스	0.001	0.001	0.0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5	0.003	0.08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24	0.012	0.476
유발계수	1.743	0.833	14.499

<표 V-10>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I

분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06	0.0057	0.2783	0.0078	0.0042	0.2045
광산품	0.0004	0.0002	0.0014	0.0088	0.0050	0.0296
음식료품	0.0185	0.0028	0.0546	0.0101	0.0016	0.0298
섬유 및 가죽제품	0.0105	0.0024	0.0462	0.0102	0.0024	0.0449
목재 및 종이, 인쇄	0.0129	0.0035	0.0630	0.0238	0.0064	0.1159
석탄 및 석유제품	0.0271	0.0018	0.0020	0.0462	0.0031	0.0034
화학제품	0.0611	0.0118	0.0815	0.0925	0.0179	0.1235
비금속광물제품	0.0028	0.0008	0.0070	0.0865	0.0238	0.2180
1차 금속제품	0.0139	0.0018	0.0112	0.1921	0.0256	0.1556
금속제품	0.0093	0.0028	0.0238	0.1314	0.0396	0.3369
기계 및 장비	0.0070	0.0020	0.0217	0.0450	0.0127	0.1400
전기 및 전자기기	0.0136	0.0036	0.0202	0.1043	0.0280	0.1551
정밀기기	0.0082	0.0024	0.0299	0.0188	0.0055	0.0684
운송장비	0.0085	0.0019	0.0172	0.0826	0.0186	0.1676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094	0.0039	0.0680	0.0289	0.0120	0.208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81	0.0079	0.0295	0.0371	0.0077	0.0287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44	0.0066	0.0639	0.0091	0.0042	0.0406
건설	0.0118	0.0040	0.0950	0.7111	0.2379	5.7195
도소매서비스	0.0398	0.0205	0.5445	0.0981	0.0505	1.3418
운송서비스	0.0190	0.0065	0.2123	0.0449	0.0154	0.50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45	0.0129	0.5879	0.0190	0.0071	0.323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282	0.0122	0.1566	0.0403	0.0175	0.223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06	0.0157	0.1692	0.0448	0.0229	0.2479
부동산 및 임대	0.0261	0.0193	0.0960	0.0216	0.0160	0.07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128	0.0073	0.1452	0.2003	0.1140	2.2648
사업지원서비스	0.0140	0.0094	0.3708	0.0141	0.0094	0.3719
공공행정 및 국방	0.4995	0.3874	4.3608	0.0016	0.0013	0.0144
교육서비스	0.2087	0.1522	3.1495	0.0004	0.0003	0.006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2747	0.1402	4.0395	0.0050	0.0025	0.0732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296	0.0145	0.6004	0.0101	0.0050	0.2048
유발계수	1.4956	0.8641	15.347	2.1467	0.7178	13.446

<표 V-11>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II

분야	정부지출(정부소비+정부투자)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00	0.0054	0.2622
광산품	0.0023	0.0013	0.0076
음식료품	0.0166	0.0026	0.0491
섬유 및 가죽제품	0.0105	0.0024	0.0460
목재 및 종이, 인쇄	0.0153	0.0041	0.0746
석탄 및 석유제품	0.0313	0.0021	0.0023
화학제품	0.0679	0.0131	0.0907
비금속광물제품	0.0211	0.0058	0.0532
1차 금속제품	0.0529	0.0070	0.0428
금속제품	0.0360	0.0109	0.0923
기계 및 장비	0.0153	0.0043	0.0476
전기 및 전자기기	0.0334	0.0090	0.0497
정밀기기	0.0106	0.0031	0.0383
운송장비	0.0247	0.0056	0.0501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137	0.0057	0.098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79	0.0079	0.0293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0.0132	0.0060	0.0588
건설	0.1648	0.0551	1.3258
도소매서비스	0.0525	0.0270	0.7190
운송서비스	0.0246	0.0085	0.2757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11	0.0116	0.530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309	0.0134	0.171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37	0.0173	0.1865
부동산 및 임대	0.0251	0.0186	0.09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539	0.0307	0.6090
사업지원서비스	0.0140	0.0094	0.3710
공공행정 및 국방	0.3905	0.3029	3.4097
교육서비스	0.1631	0.1190	2.46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2157	0.1101	3.1716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0254	0.0125	0.5138
유발계수	1.6381	0.8321	14.9312

- 유발계수만으로 볼 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생산유발효과의 크기(<표 V-12>의 (A)열)를 통해 비교할 경우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합법인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소비지출을 통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을 통하는 것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을 혼합하여 지출하는 경우보다는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부가가치유발효과(<표 V-12>의 (B)열)는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취업유발효과의 경우(<표 V-12>의 (C)열)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이 정부투자지출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이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을 혼합하여 지출하는 경우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V-12>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종합

분야	유발계수		
	(A) 생산	(B) 부가가치	(C) 취업
조합법인 분야	1.743	0.833	14.499
정부소비지출	1.495	0.864	15.347
정부투자지출	2.146	0.717	13.445
정부지출(소비지출+투자지출)	1.638	0.832	14.931

주: 1. 이들 유발계수들은 <표 V-8, 9, 10>의 마지막 행을 재배열한 것임.
 2. 취업유발계수는 해당산업 최종수요 혹은 정부지출 10억원 증가시 취업유발인원을 의미함.

3.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 추정

□ 조합법인 조세지원의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 조합법인 조세특례로 인한 직접적인 법인세수 감소 부분을 추정할 수 있음
- 이상적으로는 조세특례로 인한 사회적 효율성 상실(efficiency loss)와 조세특례로 인한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분에 대한 추정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료와 추정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이러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과세특례 규모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에 일반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구한 세액과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통해 구할 수 있음. 즉, 과세특례 규모 = (일반법인 세액산출-과세특례 세액산출)임
 - 여기서 일반법인 세액산출의 경우 2011년에는 10%/22%(2억 초과), 그 이후로는 10%/20%(2-200억)/22%를 사용하였음.

□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규모는 2011년 3,244억원에서 2015년 2,361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감소추세에 큰 역할을 한 것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의 조세특례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 기인
- 반면, 기타조합법인의 감면규모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6%에서 2015년 35%로 크게 증가하여 왔음

〈표 V-13〉 과세특례 조합법인 납부세수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준(억원)					
전체	2,773	2,331	2,350	2,533	2,790
주요 조합법인	2,041	1,674	1,597	1,711	1,822
농협	1,202	1,057	871	836	1,002
수협	88	49	21	3	14
신협	326	238	235	255	290
새마을	412	316	449	595	498
산림	12	12	15	17	17
생협	-	0.9	7.0	4.3	1.8
기타조합	732	657	752	822	968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74	72	68	68	65
농협	43	45	37	33	36
수협	3	2	1	0	0
신협	12	10	10	10	10
새마을	15	14	19	24	18
산림	0	1	1	1	1
생협	-	0	0	0	0
기타조합	26	28	32	32	35
증감률(%)					
전체	-	-16.0	0.8	7.8	10.1
주요 조합법인	-	-18.0	-4.6	7.1	6.5
농협	-	-12.1	-17.6	-4.0	19.8
수협	-	-44.4	-56.9	-86.0	364.1
신협	-	-26.8	-1.6	8.8	13.6
새마을	-	-23.3	42.0	32.5	-16.4
산림	-	-1.7	19.7	13.1	2.4
생협	-	-	674.0	-38.3	-58.3
기타조합	-	-10.3	14.5	9.3	17.7

〈표 V-14〉 조합법인별 과세특례 규모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준(억원)					
전체	3,244	2,271	2,288	2,478	2,361
주요 조합법인	2,407	1,632	1,531	1,645	1,538
농협	1,525	1,125	918	885	867
수협	114	51	22	3	12
신협	312	182	180	201	230
새마을	447	266	396	543	415
산림	9	8	10	12	13
생협	-	0	5	2	1
기타조합	837	639	756	833	824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74	72	67	66	65
농협	47	50	40	36	37
수협	4	2	1	0	1
신협	10	8	8	8	10
새마을	14	12	17	22	18
산림	0	0	0	1	1
생협	-	0	0	0	0
기타조합	26	28	33	34	35
증감률(%)					
전체	-	-30.0	0.7	8.3	-4.7
주요 조합법인	-	-32.2	-6.2	7.4	-6.5
농협	-	-26.2	-18.4	-3.7	-2.0
수협	-	-55.4	-56.0	-87.9	339.4
신협	-	-41.6	-1.1	11.5	14.6
새마을	-	-40.6	49.1	37.0	-23.5
산림	-	-11.3	16.5	27.0	4.1
생협	-	-	1,469.5	-60.4	-71.2
기타조합	-	-23.6	18.3	10.1	-1.0

주: 과세특례 규모 = (일반법인 세액산출-과세특례 세액산출). 여기서 일반법인 세액산출의 경우 2011년에는 10%/22%(2억 초과), 그 이후로는 10%/20%(2~200억)/22%를 사용하였음. 과세특례 세액산출의 경우 신고서상의 금액.

<표 V-15> 조합법인별 평균 과세특례 규모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준(억원)					
전체	73.05	51.80	51.02	55.63	53.17
주요 조합법인	86.08	57.16	52.34	56.83	54.86
농협	168.85	128.54	118.18	120.53	125.99
수협	180.35	90.52	106.29	44.87	197.17
신협	32.97	19.92	19.77	22.52	26.00
새마을	54.01	28.33	36.41	46.43	36.53
산림	16.93	17.51	13.99	23.91	24.89
생협	-	1.28	8.19	4.55	1.57
기타조합	50.91	41.79	48.53	53.40	50.29
비중(%)					
전체	100	100	100	100	100
주요 조합법인	118	110	103	102	103
농협	231	248	232	217	237
수협	247	175	208	81	371
신협	45	38	39	40	49
새마을	74	55	71	83	69
산림	23	34	27	43	47
생협	-	2	16	8	3
기타조합	70	81	95	96	95
증감률(%)					
전체	-	-29.1	-1.5	9.0	-4.4
주요 조합법인	-	-33.6	-8.4	8.6	-3.5
농협	-	-23.9	-8.1	2.0	4.5
수협	-	-49.8	17.4	-57.8	339.4
신협	-	-39.6	-0.8	13.9	15.5
새마을	-	-47.6	28.5	27.5	-21.3
산림	-	3.4	-20.1	70.9	4.1
생협	-	-	538.4	-44.4	-65.4
기타조합	-	-17.9	16.1	10.0	-5.8

주: 평균감면금액 = (일반법인 세액산출-과세특례 세액산출)/조합 수. 여기서 일반법인 세액산출의 경우 2011년에는 10%/22%(2억 초과), 그 이후로는 10%/20%(2~200억)/22%를 사용하였음. 과세특례 세액산출의 경우 실제세수 이용.

Ⅵ. 세무조정 항목 확대 가능성



Ⅵ. 세무조정 항목 확대 가능성

- 조합법인 과세방법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 조합법인 과세체계 내에서 세무조정 항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당기순이익과세는 영세성을 주장하는 조합법인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세부담 회피의 가능성이 있고 부담이 크지 않은 세무조정 항목을 선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 2013년부터 조정항목이 8개(기존 2개)로 확대되었으나, 조합법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 가능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차선책

- 김학수 외(2014)에 따르면 세법상 세무조정 항목 중 조합법인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은 총 33개
 - 성격별로는 가산조정 14개 항목, 차감조정 21개(2개 항목은 가산 및 차감조정 항목에 중복 포함)에 이룸
 - 일시적 차이 조정항목은 24개, 영구적 차이 조정 항목은 11개로 구성

- 김학수 외(2014)는 모든 조합법인 등에 적용할 수 있는 6개의 가산항목을 제시하였으며 9개의 차감항목을 조정항목으로 제시
 - 가산항목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의 익금산입
 - 차감항목은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의 손금산입, 소액미술품 취득가액 및 소액 광고선전물품 구입비용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 및 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국세 또는 지방

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일부 상여금의 손금산입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표 VI-1〉 잠재적 세무조정 항목의 성격별 구분

구분	일시적 차이 조정	영구적 차이 조정
가산조정	1.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6.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8.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18.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2.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0개)	2. 간접납부 외국법인세액의 익금산입 4.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5. 자기주식의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7.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의 익금산입(4개)
차감조정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의 손금산입 10.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의 익금불산입 11. 자산의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13.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의 익금불산입 16.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의 손금산입 17. 소액 미술품 취득가액 및 소액 광고선전물품 구입비용의 손금산입 23.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 및 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5.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28.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9.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3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32.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4개)	9.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14.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 15.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9.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일부 상여금의 손금산입 2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3.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7개) ¹⁴⁾

자료: 김학수 외(2014)

14) 세부항목의 개수가 35개로 보이나 “3.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결손금)의 익금산입(손금산입)”과 “2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 동시에 포함되었기 때문

-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무조정 항목을 분석
 - 가산항목의 경우 모든 조합에 적용가능하다고 제안한 6개 항목(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차감항목(손금산입·익금불산입) 8개에 대하여 점검
 - 세무조정 항목 검토는 조합법인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납세협력비용과 일반적인 과세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고려
 - 잠재적인 영향은 거래형태·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영향이 클 수 있는 항목일 뿐이어서 조합 등의 세무정책 또는 회계처리에 따라 실제 세무조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일반 과세목적상 필요하다는 것은 조세부과의 목적상 형평성, 회피행위 등을 고려하는 것일 뿐이어서 실제 조합 등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1. 가산항목 조정

- 김학수 외(2014)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가산항목으로 제시된 항목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등 총 6개 항목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의 익금산입
- 이 중 납세협력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산항목으로, 조세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모든 조합법인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의 2가지 항목으로 판단
 -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의 과도한 설정에 따른 조세회피의 문제점 방지¹⁵⁾를 위해서 손금산입 한도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금융업을 영위하는 조합법인이 많고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적정성에 대한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기 때문

15) 조합법인의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다툼사례가 있음(조심2016구2303, 2016.08.31.; 조심2014구4967, 2015.12.07.; 조심2014서4788, 2015.01.02.) 대전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20618 판결.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 세무조정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항목으로 전체 조합법인으로 확대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음
 - 일반 과세체계하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적용대상이 될 조합법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거래의 발생빈도나 특례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법인 등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산항목은 다음과 같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소규모 조합법인이 세무상 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높은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주식) 시가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주식평가와 관련된 임의적 회계처리는 매우 드문 편에 해당함.¹⁶⁾ 따라서 세법지식이 부족한 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고정자산) 현행 당기순손익 과세체계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회계상 손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고정자산과 관련된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별도 관리 문제가 발생함
 - (재고자산 등)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장기간 보유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여부 및 시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높은 세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모든 조합법인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의 익금산입
 -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수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높은 세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조합법인 등이 세무조정하는 데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16) 시가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상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는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음

2. 차감항목 조정

- 선행연구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제시한 차감항목 중 선별적 가산항목인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일부 항목¹⁷⁾을 제외한 8가지 항목을 검토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이익처분에 따른 일부 상여금의 손금산입,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의 익금불산입

- 납세협력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감항목으로, 조세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모든 조합법인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및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은 조합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한 중복과세 방지 또는 징수오류에 대한 보상효과를 축소하지 않기 위한 취지로, 세무조정의 난이도가 낮은 항목
 -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조합법인 등의 경우, 배당소득의 발생 빈도와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할 때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무조정의 난이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항목
 - 이익처분에 따른 일부 상여금의 손금산입
 -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일부 상여금¹⁸⁾의 경우, 그 실질을 이익처분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7) 선행연구에서는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즉시상각의제 포함)을 선별적으로 반영할 가산항목으로 고려하고 있어 (1) 즉시상각의제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되는 '소액 미술품 취득가액 및 소액 광고 선전물품 구입비용의 손금산입'과 (2)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의 익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 및 공사부담금 보협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18)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금, 법 소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지급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임원 제외)

이러한 판단 기준은 조합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세무조정 난이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항목

□ 거래의 발생 빈도나 특례 등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법인 등에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감항목은 다음과 같음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손금산입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으므로 선별적 검토 대상으로 구분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동 조정항목은 피통합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 등에 해당하고 동 주식 등의 가액이 피통합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피통합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다만, 조합법인 등의 경우, 중소기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는 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 자본거래(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조합법인 등의 경우 자본거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에 비해 조정대상이 되는 수익(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의 계산 및 세무조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의 익금불산입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72조)를 적용받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에 대해 정부지원 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목적
 - 동 제도는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 활동을 통해 조합원 복리증진과 거래관계자들의 편익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로 분류
 -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기능
 -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부담을 줄여주고, 일반법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법인 활동을 지원
 -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접대비 등 8개 항목 세무조정
 -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추정) 2,360억원

- 조세특례의 타당성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경우, 영리활동을 영위하면서 활동분야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 공익활동 여부는 보장되지 않음
 - 개별 법률상 비영리법인 또는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복리증진 목적하에서 조합원 상대의 영리추구 금지를 의미하는 것
 - 실제 농협, 수협은 설립취지에 반한 영리목적 업무 금지를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한 최대봉사 및 이익편중 금지 조항과 함께 규정
 - 영리목적 업무를 금지하는 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 공익활동 여부와 조합원(취약계층) 지원유무로 타당성 평가
 - 국회 등의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조합원 지원을 공익활동으로 가정하기도 하기 때문

- 공익사업 수행여부는 먼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 유무를 통해 판단 가능
 -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회원들의 복리증진으로 직접적으로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합의 사업내용 역시 공익사업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없음
 - 조합법인들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조합원 중심이므로 공익성 추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
 -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조합원에 대한 제약이 없는 한 공익활동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 세부규정을 통해 조합법인의 공익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음
 - 오히려 「새마을금고법」은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립금+적립금)의 50%로 규정
 - 사후적으로 조합법인이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조세지원 근거가 될 수 없음

- 주요 조합법인들의 2016년 지출실적 자료에서도 공익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복지사업, 교육사업의 비중은 높지 않았음
 - 이러한 사업들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
 - 특히 교육사업은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 실제 조합법인 등의 활동내역은 조세특례를 받는 조합법인이 조합원에 대한 지원 이외 공익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성을 지닐 수 있는지는 조합원의 성격에 따라 구명 가능

- 조세특례 대상 조합법인들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취약계층(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지 않음
 - 주로 출자금 납입여부, 지역 거주여부, 산업 종사여부의 요건으로 운영
 - 산업종사 여부는 농협, 수협, 축협 등 특정 산업 종사자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법인의 요건으로 기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가입시점에 종사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가입 이후에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조합법인들은 준조합원제도를 통해 사실상 모든 거주민에게 자격을 허용하고 있음
 -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대상과의 연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 또는 높은 수준의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특정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과세특례는 조합법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 조합법인 투입자본의 세후수익률을 높여 자본유입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는 조합법인의 활동 촉진
 - 실제 확인가능한 조합법인의 배당상황을 보면 출자자 배당금액이 이용고배당보다 많은 상황
 - 규정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사업이용실적 배당(이용고배당)이 최우선 순위 배당이며, 소비자생협은 전체 배당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자 배당금액이 더 크게 나타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다른 유형의 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의 경우, 비경제적 또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배당도 시행하지 않음에도 수익사업에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
 -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을 축소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단계에서도 소득세를 면세
 -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배당 비과세 등도 동시 적용
 - 조세지원 대상이 아닌 협동조합 등과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외국과 비교하면 복잡한 제도로 높은 지원수준 제공
- 외국은 조합원 지원을 위해 일반법인의 과세제도를 따르지만, 이용고배당을 통해 법인단계의 과세를 면제하는 단순한 형태 유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로 분석하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 정부지출(소비+투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취업유발효과는 떨어짐

-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조합법인을 지원하는 것(유발계수 1.743)은 정부소비지출을 통하는 것(유발계수 1.495)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투자지출을 통하는 것(2.146)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짐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유발계수 0.833)이 정부투자지출(0.717)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0.864)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취업유발효과는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14.499)이 정부투자지출(13.445)보다는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15.347)이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을 혼합하여 지출(14.931)하는 경우보다 효과적이지 못함
- 법인의 순이익률을 성과지표로 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면 2011~2013년까지는 특례법인의 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2014~2015년에는 그 결과가 역전된 것으로 추정
- 조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순이익률 개선속도가 비교법인들에 비해 느린 것은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근거
 - 특히, 수입규모 10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법인들의 상대적 순이익률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심층평가 결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제도의 불투명성, 지원수준 등은 개선 필요성 있음
- 특정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이용고배당을 활성화할 필요
 - 농·수·임·축산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생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
 - 조세지원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문제는 그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중 당기순이익 과세는 일반법인 대비 지원수준 판단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
 - 또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조합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향후 축소 조정할 필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법인세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현행 당기순이익기준 과세체계를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을 완전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
 - 영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일정 수입규모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하여 전환 가능
 - 다른 대안으로는 현재 8개 세무조정 항목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익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이월익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법인세 등의 환급액,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의 익금불산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국세청, 「조합법인 세무신고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V):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2016.
-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8. pp. 7~40.
- 김학수 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조특법 §72)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농림부,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조세소위원회)」, 제5차, 제8차, 제9차.
- 중소기업청,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5
- 해수부,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 행정자치부, 『2017년 수정 성과계획서』, 2016.

부 록



<부록>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FGI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FGI

- 일시: 2017년 4월 8일, 15일
- 장소: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EMNA 7층 회의실
- 참석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생협 등 조합법인 중앙회 관계자

가. 조합법인관계자 답변 요약

1. 설문내용

1-1. 현재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 현재 중앙회 산하 대부분의 조합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 중

1-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이용하면, 선택과정에 대한 질문

1-2-1.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선택한 주체

-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선택에 대한 별도 선택주체는 없으며, 과거부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선택(수협중앙회 등)
-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및 총회가 당기순이익 과세를 선택(산림조합중앙회)

1-2-2.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선택

- 1981년 이전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었으나, 1982년 이후부터 법인세 과세전환되면서 일반법인의 경우 35%인 반면, 수협의 경우 5%로 과세되어 과세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수협중앙회)
-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과세특례제도 선택(산림조합중앙회)

1-2-3.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선택의 사유

- 수협 전체가 선택하고 있으며, 세부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 일반과세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선택한 것으로 사료(수협의 경우 당기순이익 포기법인 없음)(수협중앙회)
-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회피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축소(산림조합중앙회)

1-3.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운영의 목적

- 조합법인 활성화(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조합원 지원(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3-1. 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 매우 높음(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3-2. 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 실제 소득이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기타(1차 산업 보호 육성 및 가입조건이 까다로움) 등의 이유로 조합원 지원 필요(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3-3. 조합원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얼마나 효과적?

- 매우 높음(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3-4. 법인세 과세특례가 조합 법인을 활성화 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함?

- 기타(조합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가 적고, 잉여는 조합원과 조합에 재투자되어 조합의 지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법인세 특례제도는 그것을 최대화 시켜준다)(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1-3-5. 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효과

- 높은 편(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1-4. 조합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 저율과세(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저율과세, 당기순이익 기준과세(일반영리법인과 달리 수협은 비영리법인이며, 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가 가장 효과적이며 또한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는 일부 조합을 제외한 대부분 조합의 경우 사업규모도 영세하고 인력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경비 및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수협중앙회)
- 당기순이익 기준과세(산림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농·산촌에 위치 등으로 세무조정능력이 취약하여 일반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추가적인 과세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는 세무대리인 선임 등에 대한 비용증가로 이어져 임업인 잉여금 배당액 감소 등으로 임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감)(산림조합중앙회)

1-5. 소속 조합법인의 이용고배당 활용 정도는?

- 투자자 배당보다 많은 금액(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투자자 배당과 유사한 금액(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1-6. 배당 실시여부와 규모 결정자

- 이사, 이사회 결정 후 대의원총회 승인(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조합원, 총회의 의결(수협중앙회)
- 이사회, 조합원 총회 등(산림조합중앙회)

1-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과세특례 및 설립의 편리함으로 인해 무분별한 협동조합 설립과 협동조합을 통한 법인세 회피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서 협동조합은 사회가 책임질 수 없는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회공헌이 가능한 방식으로서 국가적으로도 권장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함. 이에 과세특례를 유지하여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쉽게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수협조합의 존재이유는 어업인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자재,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수협법」 제13조)에 있으며, 수협조합은 어업인을 위해 치어방류, 기자재 지원, 의료지원, 재난재해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됨(수협중앙회)

- 과세특례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며, 조합법인의 경영의 악화로 이어져 비영리법인의 본질적인 목적사업 지원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조합원에 소득재분배가 어려워짐(산림조합중앙회)

1-8.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 원가경영을 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이익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이익만 나므로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면 조합에 적립 및 재투자금액이 적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배당을 안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하게 됨. 외국 사례에서는 이용고배당액을 손금산입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음. 배당을 위해 조합원 가입이나 활동을 하는 조합원은 극소수라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익이 났을 경우 조합원에게 적절한 배당을 해주고 그 금액에 대해 비용인정을 해준다면 조합원 만족과 조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음(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조합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기부금 이외에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세무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합의 인력구조 및 사업규모를 고려한다면, 세무조정의 간소화(접대비, 기부금)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수협중앙회)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취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 조합법인의 세부담 증가 우려, 세무리스크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 접대비만을 세무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산림조합중앙회)

1-9. 조합법인 지원과 조합원 지원 제도 중 조합법인 활성화에 더 기여하는 제도는?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한살림성남용인생활협동조합법인, 산림조합중앙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수협중앙회)